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종합보고서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일시

2025. 6. 13.(금) 14: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이 발간물에 게재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발간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목 차 〉

■ 세미나 진행순서	1
■ 기초연설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3
- 박용상(변호사)	
■ 제1주제 발제문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13
- 윤재남(언론중재위 서울제8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제2주제 발제문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47
-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지정토론	
제1주제 토론문(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83
제1주제 토론문(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89
제2주제 토론문(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95
제2주제 토론문(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103
■ 종합토론	109

세미나 진행순서

개 회

인 사 말 김 성 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심 석 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기조연설 박 용 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사 회 이 재 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제1주제 발표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발제자 : 윤 재 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 서울제8중재부장)

지정토론 • 한 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장 철 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제2주제 발표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발제자 :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정토론 • 심 영 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 손 형 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폐 회

기조연설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박용상

변호사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박 용 상
변호사

오늘날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피해구제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일이다.

2005년 제정된 현행 언론중재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어서 디지털의 시대의 언론 피해구제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 청구권에 의한 구제는 인용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한 차례의 정정 또는 반론을 게재·방송함으로써 끝날 뿐, 온라인에 존재하는 위법성이 확인된 침해 기사는 그 존재를 유지하게 되고(손해배상이 명해진 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포털 등의 검색 서비스에 의해 언제나 검색될 수 있어 피해를 지속시킬 수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는 2015년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언론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6. 10. 28.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 의원의 발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성립 제출되었으나, 동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됨으로써 폐기되었다.

그 개정안의 골자는 ①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명문화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격권 침해 표현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인터넷 보도 기사에 대한 댓글의 인격권 기타 권리침해행위의 구제방안, 그리고 ③ 중재위와 법원에서 구제가 확정된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확산되는 경우 구제방안에 관해 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는데 있었다.

우선 위법한 침해적 보도 기사가 온라인에 존속할 뿐 아니라 이를 퍼가 전파하는 행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배가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내용의 펄글 등이 계속 검색될 수 없도록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재위의 조정 결정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기사의 삭제 및 정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원 기사를 복제·전파한 자를 상대로 그 취지에 맞도록 삭제·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복제·전파 기사가 소재하는 사이트(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는 포털 등 검색 사업자에 대해 위법성이 확인된 침해적 기사를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보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및 원 기사에 대해 정정 또는 추후보도가 명해졌을 때 보완수정 또는 추가보충에 의해 업데이트된 내용만이 검색되도록 하여야 하고(정정 또는 추후보도가 명해진 경우에는 원 기사에 그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여 첨부하거나 링크에 의한 참조의 방법이 구사될 수 있음), 업데이트되지 않은 원 기사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폼기사 등은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조치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삭제 및 열람 차단청구는 필요한 것이다.

기사 댓글

먼저 기사 댓글에 의한 피해가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위법한 침해적 댓글에 대한 합리적 구제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언론사 등은 자율적으로 위법한 침해적 댓글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것이 미진한 경우 피해자는 위법한 침해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중재위에 구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작성자가 언론사인 온라인 기사에 대한 불만이면 중재위의 관할이지만, 그 기사 댓글은 독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위원회가 함께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¹⁾

그러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comment)은 게시자 개인들의 표현행위(이른바 이용자생성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 UGC)이지만, 그것은 인터넷 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관해 독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미디어의 저널리즘 활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²⁾ 이러한 UGC도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되면 그 언론사의 기사와 같은 파급력을 갖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기사의 댓글 시스템의 설치·운영·관리는 인터넷 언론사가 행하는 것이며, 거기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을 제거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는 게시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³⁾ 그리고 댓글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기사의 위법성 여부 판단과 밀접하게

1) 이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개 댓글 게시자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심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2)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적·쌍방향적 미디어의 개념, 유럽인권재판소 2013. 10. 10. Delfi v. Estonia 판결 및 동 사건의 2015. 6. 16. 대심판부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및 위 유럽인권재판소 Delfi 판결 참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 중재위가 댓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경제상·실무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중재위에 그에 관한 조정·중재 관할권을 부여하여 일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댓글의 처리

또 인터넷 보도 기사가 확산·전파되는 댓글에 의한 피해는 막중함에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중재위는 이 개정안으로 인터넷상 침해적 보도에 수반하여 또는 그것이 확산·전파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위 또는 법원이 심리한 또는 심리 대상 사건의 침해적 보도와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경우(이른바 댓글) 이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청구를 중재위가 함께 관할할 수 있게 하여 일괄적 구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중재위 개정안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 기사나 그 댓글 및 복제·전파물은 헌법상 언론(미디어)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 판단 및 규제 여부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임의적 규제(임시조치)에서 제외시키고, 언론보도에 관한 분쟁 처리 관할권을 갖는 중재위에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언론의 자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기사는 쉽게 전파·복제되고 그 침해적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그 구제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부인될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보도 및 그와 관련한 피해를 윈스톱 서비스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보통신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또는 포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문에 관해서는 법적 판단의 부담과 그 오류로 인한 책임부담에서 해방되게 되므로(개정안 제18조의2 제7항 참조)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인 미디어에 의한 피해 구제

현행법에 의하면, 실제로 인터넷 언론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체가 발행하는 보도(유사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서는 그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를 위해 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비추어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모

마일 뉴스 서비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 펀딩 서비스, YouTube, SNS에 의한 뉴스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적, 쌍방향 저널리즘에 의한 뉴스서비스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간편·신속한 중재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이러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재위가 이들의 특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본법의 구제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중재위의 개정안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한편, 언론이 아닌 주체(개인이나 법인)가 게시한 온라인 정보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 경우 현행법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살린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조치 제도의 흠결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위와 같은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동법 제44조 제1항, 제2항4),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제44조의2 제1항), 그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조 제2항). 여기서 사업자가 행해야 할 구제조치로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① 삭제 ② 임시조치⁵⁾ ③ 반박내용의 게재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피해자

4) 이 규정이 ISP에게 일반적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의무의 해태가 ISP의 불법행위의 근거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무의 부과는 고지에 따라 침해 자료를 제거한 ISP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면책조항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임시조치’는 피해자에 의한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44조의2 제4항).

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④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상 삭제 및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작성·게재한 법익 침해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의무(고지 및 제거 체제, notice and take-down regime)를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정부가 행할 규제를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 인터넷상의 위법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해 그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단속 역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로 하여금 규제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율 및 공동규제 프레임은 여러 국가에서 법제화되고 있다.^{7) 8)}

이렇게 정부가 행할 규제를 사업자에게 맡겨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 즉, 입법자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뒷받침하고 이를 고무하기 위해 사업자가 위법적 정보를 제거하는 절차와 요건을 분명히 법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업자의 면책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⁹⁾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온라인 위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과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유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취해져야 한다는 점이다.¹⁰⁾

복원청구절차의 신설 필요성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는 그 시행 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차단함으로써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6)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임시조치 제도의 유래를 보면, 이것은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단속을 위해 약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관행으로서 서비스 플랫폼인 ISP가 동시에 규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미국의 DMCA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의 고지 및 제거조치(notice and takedown regime) 참조

8)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는 기존의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 규율에만 의존할 수 없고, 인터넷 관계 참여자, 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와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권력에 의해 그 흠결을 보완하는 공동규제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공동규제 체제가 제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그 구체적 내용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

10) Assaf Hamdani, WHO'S LIABLE FOR CYBERWRONGS? 87 CNLLR(Cornell Law Review, May, 2002) p. 956.

고, 특히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사법권 아닌 행정기관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더욱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및 임시조치제도에는 피해자측이 구제를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 삭제 또는 차단되는 정보를 게시한 표현행위자가 서비스사업자에게 이의하여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동 조항은 인터넷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그 비판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미국 저작권법(DMCA)이 상세히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부터 게시자에게 반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비스사업자에 의한 복원절차 (take-down and put-back regime)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임시조치 등 제도를 규정한 이들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라고 판시하였다.¹¹⁾

나아가 현재는 “위와 같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게시청구’를 해 올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최장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는바, 이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라고 판시하여 국가입법권의 해태를 묵인하고 있다. 또 이러한 무관심 때문에 정부를 대신하여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차단 및 제거를 이행한 ISP의 면책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주역인 ISP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법의 침해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제1차적 자율규제 주체로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구제가 거부된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11) 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임시조치 합헌 결정]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 2항).¹²⁾

이 경우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피신청인을 특정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개 게시물에 관해 게시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¹³⁾

이와 같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을 알아낸 후에 그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방통심의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접수한 심의위는 조정 전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심의위 산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동 규칙 제13조 제1항, 제14조). 조정부는 60일 이내에 합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에 건의하게 되고, 심의위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조정이 성립되게 된다(이상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이상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신속·간이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려 한 입법의도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재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정해져야 할 여러 문제를 결여하여 불완전한 입법에 머물고 있다.

가해자인 게시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절차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수반될 뿐 아니라 이를 거쳐 밝혀진 신원자를 상대로 방통심의위에 피해 구제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만족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은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는 소극적인 조정(調停) 기능에 국한되고 있어 실효적인 분쟁 해결을 기할 수 없고, 문제된 정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상의 권리분쟁에 관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법정기관을 신설하여 대처하려는 것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인정되고 있는 강제조정의 권한을 조정부에도 인정하되, 사법적 기본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대심적 구조에 의해 분쟁 당사자의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원에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대량으로 게시되는 언론보도 기사의 댓글

12)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다(동법 제44조의10 제1항, 제2항).

13)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용자 정보의 청구는 동 규칙에 의해 역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하여야 하며,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동 규칙 제29조 제1항),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이나 순식간에 무제한 퍼져나가는 펴기사에 관한 분쟁에 적용한다면 그 피해의 구제는 극히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중재위의 일괄적 관할에 맡겨야 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둘째, 실제로 인터넷 언론매체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체(이른바 1인 미디어)가 발행하는 보도(이른바 유사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분쟁에 관하여는 중재위의 관할로 하여 간편 신속한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셋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절차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개시하는 절차와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 구제의 방안 및 절차도 정보통신망 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맞추어 각종 문서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시행상 필요한 통지, 고지, 송달, 기타 의사표시의 전달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나아가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게시자)의 실명을 밝힐 필요 없이 인터넷 아이디(또는 이메일 아이디)만으로 절차상의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른바 가명정체성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그 외에 소극적인 조정기능에 국한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강제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적법절차의 요청과 사후적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1주제 발제문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윤재남

언론중재위 서울제8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윤재남

언론중재위 서울제8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I. 들어가며

올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¹⁾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언론중재법은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뉴스통신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해 제정된 법률이며,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강화하였다. 언론중재법은 1981. 3. 31. 발족되어 올해로 45년을 맞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더불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언론통제 장치로 의심받기도 하였던 언론중재제도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²⁾ 취지를 반영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개정한 이외에는 수차례 개정 논의만 있었을 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된 언론보도 매체가 신문이나 TV, 라디오 방송이던 것에서 인터넷 미디어 매체로 바뀌었음에도 20년 전 상황에 기반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의 언론보도 매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언론중재법 시행 20년을 맞아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운영 성과를 살펴본 다음, 언론중재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으로서 심리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하여 짧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언론중재제도의 현황 분석 및 운영 성과

1) 2005. 1. 27. 제정, 2005. 7. 28. 시행

2)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1. 서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개년간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62.7%에서 74.1%에 이른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23년도 언론 관련 소송 169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 승소율은 44.4%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경우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2024년도에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당사자 중 신청인은 79.7%, 피신청인은 77.9%, 상담이용자는 82.4%가 언론중재제도 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³⁾ 언론중재제도에 의한 구제를 신청한 신청인 중 85.6%, 상담이용자의 83.8%가 각 조정 신청 또는 상담 이용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 중 75.6%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율,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아래에서 언급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청구건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신속한 피해구제제도인 언론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이며,⁴⁾ 법원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⁵⁾ 아래에서는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현황⁶⁾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현황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청구건수가 2,000건을 넘었고, 2016년부터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2020년부터는 4,000건 내외의 사건이 청구되고 있다. 2009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0년부터 청구건수가 늘어났으며, 인터넷 미디어 매체의 증가, 인터넷을 통한 뉴스의 특성,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 여러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청구건수가

3) 언론중재위원회 (2024b). 202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4)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65.

5) 손형섭 (2020). <4차 혁명기의 IT·미디어법>. 박영사.

6) 2024년 기준 최근 10년간 중재 건수는 42건이며, 2019년 이후 접수된 중재 신청 사건은 없기에 아래에서는 조정 신청 사건을 위주로 살펴본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

(2005. 1. 1. ~ 2024. 12. 31.)

연도	청구 건수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IPTV	기타
2005	883	495	114	174	33	18	48			1
2006	1,087	598	154	216	25	17	77			
2007	1,043	504	130	250	10	30	113			6
2008	954	424	130	189	12	33	157			9
2009	1,573	485	147	459	27	38	233	181		3
2010	2,205	356	184	189	24	42	567	841		2
2011	2,124	405	181	250	9	62	705	510		2
2012	2,401	495	169	243	11	83	946	454		
2013	2,433	380	142	288	10	112	1,130	369		2
2014	19,048	1,378	139	3,776	25	1,117	8,436	4,177		
2015	5,227	619	138	892	18	264	2,490	799		7
2016	3,170	405	168	423	16	165	1,661	330		2
2017	3,230	261	119	361	23	206	1,842	416		2
2018	3,562	306	145	331	19	192	2,141	421	2	5
2019	3,544	357	105	436	12	187	2,055	388		4
2020	3,924	384	122	465	4	247	2,102	596		4
2021	4,278	322	131	495	8	216	2,476	610		20
2022	3,175	234	75	387	6	149	1,857	450		17
2023	4,085	388	99	345	8	218	2,491	498		38
2024	3,937	287	89	317	10	176	2,537	473		48
계	71,883 (100.0)	9,083 (12.6)	2,681 (3.7)	10,486 (14.6)	310 (0.4)	3,572 (5.0)	34,064 (47.4)	11,513 (16.0)	2 (0.0)	172 (0.2)

※ () 안의 숫자는 %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3.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 및 피해구제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0% 초중반대였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년을 평균한 피해구제율은 76.3%에 이른다. 다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피해구제율이 70%를 넘지 못하였는데, 이 시기에 접수 건수 대비 기각이나 각하된 사건 수도 다른 연도보다 많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량으로 신청한 사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취하하거나, 조정에 부적합하여 조정

성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피해구제율은 꾸준히 70%를 넘고 있다. 한편, 위 피해구제 건수에는 조정 성립이나 직권조정결정 확정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례 이외에 취하된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받고 스스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비록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성립은 아니지만 언론중재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피해구제 사례로 평가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직권조정결정은 전체 청구건수의 4.3% 정도로 많지 않다. 특히 최근 3개년간은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제기 간주로 처리되는 데에 대한 부담감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연도별 조정신청 처리현황

(2005. 1. 1. ~ 2024.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160	123	62.4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250	163	60.5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257	131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237	113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361	214	73.9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891	240	79.2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680	271	71.3
2012	2,401	805	76	66	427(10)	44	11	787	185	71.5
2013	2,433	916	54	57(2)	295(14)	20	2	884	205	77.6
2014	19,048	1,156	133	122(3)	1,105(16)	106	76	15,420	930	88.7
2015	5,227	940	218	101(2)	710(4)	322	32	2,633	271	77.9
2016	3,170	961	182	118(4)	416(5)	108	19	1,049	317	72.3
2017	3,230	915	72	61	488(6)	122	86	1,234	252	73.7
2018	3,562	1,081	111	89(7)	645(8)	88	12	1,264	272	71.4
2019	3,544	1,129	121	100(6)	734(26)	279	65	932	184	69.2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0	3,924	1,245	166	99	891(11)	275	34	1,029	185	67.8
2021	4,278	1,221	146	73(4)	894(16)	596	132	838	378	62.7
2022	3,175	949	69	34	684(8)	450	193	686	110	67.6
2023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2024	3,937	1,452	88	66	649(14)	335	38	1,028	280	72.5
계	71,883	17,713	1,854	1,236(42)	9,987(174)	3,433	876	31,772	5,012	76.3
%	100.0	24.6	2.6	1.7	13.9	4.8	1.2	44.2	7.0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III.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새로운 유형의 뉴스콘텐츠 등장에 따른 언론중재 대상의 확대 문제

가. 새로운 유형의 뉴스콘텐츠 등장과 확대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 당시 인터넷 신문을 언론 범위에 포함시키고, 2009년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매체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2009년에 개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언론중재법은 전통적인 언론보도 매체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매체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를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4’에 의하면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된 47개국 평균보다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높으며, 51%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5.9%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뉴스/시사 정보를 이용한다고 답하였고, 이들은 신문사/방송사의 공식 채널(63.0%)을 통한 경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개인이나 단체의 시사채널(63.6%)을 통하여 뉴스/시사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5.1%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언론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전파,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혐오 표현, 선정적인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부작용

도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이용자들은 시사 보도나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방송에 대하여 전통적인 언론보도 매체에 의한 보도만큼 신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튜브를 통하여 허위 또는 악의적인 내용이 방송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나. 현행 법령에 의한 유튜브 콘텐츠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한계

언론중재위원회에 실제 접수된 유튜브 방송에 대한 조정 사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①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자가 본 매체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동일하게 게시한 경우, ② 위와 같은 자가 본 매체에 게재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③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해당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④ 위와 같은 자가 다양한 정보를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⁷⁾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언론보도등)’이고(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언론등’이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의미하며(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참조),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의미하기에(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참조), 언론사가 주체인 ①, ②의 경우에도 엄밀하게는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이 아니다.⁸⁾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8월경부터 언론사의 유튜브 형식의 보도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하여 왔으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콘텐츠 중 그 내용과 형식이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⁹⁾ 조정실무상 언론사가 유튜브 보도를 포함시킨 조정 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의 경우에는 그 구독자도 해당 유튜브 방송을 언론 내지 뉴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어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섭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③의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방송의 내용이나 형식상 구독자들이 해당 유튜버를 언론사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여 방송 내용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방송은 전통적인 언론보도 매체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할 정도로 파급력도 상당하기에 허위 사실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이용자 중 93.8%가, 상담이용자 중 88.3%가 각 개인 유튜버, 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

7) 언론중재위원회 (2024a). 중재위원 실무가이드.

8) 김승수 의원이 2024. 7. 17.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보도등’에 포함시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9) 권형돈 (2024, 12).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방안>. 2024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서울.

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대중들도 유튜브로 인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¹⁰⁾ 현행 언론중재법상 ③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렸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 피신청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된 사례도 있으나,¹¹⁾ 피신청인이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각하될 것이다.¹²⁾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언론보도 매체로 인식하고, 피신청인 스스로도 그러한 인식을 의도·유발하였다 라도,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언론보도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유튜브 방송은 정보통신의 영역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을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및 그 시행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제4호, 시행령 제8조 참조).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유튜브는 자체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불법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콘텐츠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쉽지 않다.¹³⁾ 민·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방통위법의 시정요구나 유튜브 자체 이용약관을 통한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만으로는 왜곡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다. 새로운 유형의 뉴스콘텐츠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유튜브 방송은 그 진입 장벽이 낮기에 누구라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10) 언론중재위원회 (2025). 2024년 연간보고서.

11) 임상혁 (2021, 1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가능성 검토>. 2021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서울.

12)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접수단계에서 조정 대상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각 중재부가 2차적으로 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24a).

13) 권형돈 (2024, 12). 앞의 글.

방송을 제작할 수 있고, 방송의 내용과 방향성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았던 유튜버가 뉴스 전문으로 바꾼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킨다거나,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표현의 대표적인 수단이 유튜브이고, 유튜브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한 방송, 보도는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에 대한 범익 침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¹⁴⁾ 현실적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피해구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언론보도 매체의 역할을 하거나 이를 표방하는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이들을 언론중재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적·개별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의 진입 장벽이 낮고 방송 방향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추상적으로 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이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인터넷언론사’라 하여 이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의5 제1항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등’ 내지 ‘언론보도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¹⁵⁾ 다만, 유튜브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언급할 펄글, 댓글까지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넓힌다면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과 업무 범위가 겹칠 수 있기에 미디어법 전반에 대한 조정과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¹⁶⁾

한편,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 중 일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제작해 방송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편

14) 문재완 (2012, 6).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서울.

15) 양경승 (2015, 8).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언론중재위원회 2015 정기세미나, 강원도.

16) 권형돈 (2024, 12). 앞의 글.

훼하는 방송을 기획·제작해 방송한다. 이러한 유튜브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기에, 민사상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계속하여 비슷한 방식의 유튜브 방송을 제작해 방송하기도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유튜버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당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손해액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언론의 자유 위축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제도 도입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방송을 반복하여 제작·방송하는 유튜버 등이 유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열람차단, 기사삭제 청구권의 법제화 문제

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열람차단, 기사삭제의 필요성 대두

앞서 II의 ‘2.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현황’에서 보았듯이 최근 5년간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 신청은 전체 신청의 68~7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는 짧은 시간에 멀리까지 곳곳에 퍼지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검색어만 입력하면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다. 그 기사를 검색할 의도는 없었는데 연관 검색,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인하여 우연히 기사를 읽게 되기도 한다. 과거 지면이나 유선 방송을 통한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일회적, 일시적이었던 반면, 인터넷 기사는 삭제되거나 열람차단되지 않는 한 쉽게 접근 가능하기에 사실상 그로 인한 피해도 영구적이다. 또한 삭제되거나 열람차단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는 다른 곳으로 유통되어(이른바 ‘뿔글’) 피해가 확산된다. 이 때문에 언론보도 매체와 보도 방법이 과거와 현격히 달라진 현 상황에서는 종전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만으로는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 현직 기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4%가 기사 전체 내지 일부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점¹⁷⁾, 언론중재위원회가 2023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255건을 분석한 결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기사삭제 청구도 함께 한 경우가 48건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점¹⁸⁾, 202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

17) 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9-07).

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에 대하여 신청인 중 96.2%, 상담이용자의 94.1%가 각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보더라도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기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외에 기사삭제나 열람차단의 조치에 대한 요구와 그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나. 현행 법령에 의한 기사삭제, 열람차단 가능성 및 한계점

현재도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31조에 의하여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위 적당한 처분으로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고 하여, 인격권에 기하여 기사삭제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민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른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한다는 제한이 있다. 인격권 침해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삭제 청구 등은 상대방인 정보게재자의 관여 없이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언론중재제도에 의한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18) 언론중재위원회 (2024c).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다. 언론중재법에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를 추가할 필요성

언론중재법에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중재법 제31조에 기하여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를 함께 하거나 기사삭제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 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사삭제, 열람차단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실무상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기사삭제, 열람차단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여 그 요건과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과도하고 무리한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제도를 통하는 경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되어 왔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보도된 기사가 진실이며 언론사등에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청구를 받아줄 필요성이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언론중재법에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청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사삭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기사 작성자에게는 해당 기사나 정보가 유지·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¹⁹⁾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기사삭제 청구 사건은 쌍방이 참석한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기사 작성자)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이 성립될 수는 없으므로 기사 작성자의 권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의 대상에 대한 검토

기사의 열람차단도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비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중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사삭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기사는 작성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에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기사를 판단하여 과도하게 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도 있다.²⁰⁾ 오보인 기사조차 그 자체로서 역사적 가치를

19) 정애령 (2019).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143-177.

20)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05-151.

가지는 등 기사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기사삭제는 신중하여야 한다.²¹⁾ 또한 권력자들이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의 열람차단권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²²⁾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받을 수도 있다.²³⁾ 대중들도 공인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기사에 비해 기사삭제의 필요성을 더 낮게 인정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원 기사와 함께 게재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만으로 당사자의 명예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기사삭제는 후순위 수단으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⁵⁾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사를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사삭제나 열람차단이나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언론의 자유 침해 정도가 중대한 기사삭제는 열람차단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사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기사삭제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중재법상 기사삭제, 열람차단 청구도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펴글과 댓글에 대한 구제 방안

가. 펴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확대

인터넷 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기사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이른바 펴글과 기사에 대한 댓글로 인한 피해도 증대하고 있다. 때로는 한 언론사가

21) 문소영 (2016, 12).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종합보고서, 서울.

22)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79-205.

23) 문소영·김민정 (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6호, 151-182.

24) 박아란 (2019). 언론 자유와 기사삭제 청구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이슈>, 제5권 제5호, 1-15.

25) 박아란·김현석 (2021). 앞의 논문.

보도한 기사를 여러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한다. 원 기사를 그대로 퍼간 곳이 언론사라면 차라리 피해자가 펴글 상대방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나, 원 기사를 임의로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게재하면 펴글 상대방을 특정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한편, 언론사등이 보도한 기사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용이하지 않으나, 당사자를 특정한 댓글로 인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정인을 언급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로 인하여 그 특정인이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정 댓글을 삭제하더라도 원 기사가 남아있는 한, 유사한 댓글이 계속 생성되어 피해가 지속되기도 한다.

나. 펴글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펴글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원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확산되는 피해에 대하여 최초 유포자에게 책임을 지운 독일의 2016년 판결²⁶⁾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잘못된 정보의 최초 유포자는 그러한 표현의 제거, 즉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²⁷⁾ 그런데 원 게시자 내지 최초 유포자에게 확산된 기사의 삭제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추가 게시자를 모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외에, 추가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그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한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펴글 게시자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라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퍼간 언론사가 다수라면 사실상 동일·유사한 조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과다 투입된다. 펴글 게시자가 언론사가 아니라면 현재의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원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남아있는 펴글에 대한 접근만 가능해지므로 마치 펴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원 기사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기사에 해당하고, 펴글 게시자가 특정된다면 그 펴글 게시자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 기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원 기사를 보도한 자에게 펴글 게시자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에 펴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조치이어야 하

26) BGH 2015.7.28. VI ZR 340/14

27) 정애령 (2019). 앞의 논문.

되, 펴글 게시자도 독립한 표현의 자유 주체이기에 그의 절차 참여권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2015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언중위 2015년 개정안')에서는 펴글이 소재하는 인터넷 공간(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의 관리자(이하 '사이트 관리자')에 대하여 그 펴글의 삭제, 정정, 반론 게재 등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사이트 관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이트 관리자 등이 조정결과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7일 내에 펴글 게시자의 이의가 없으면 조정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이트 관리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구제방법이 확대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이트 관리자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인지할 수 없는 펴글 게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글을 퍼가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여럿 나온 끝에 포털사이트에서 2019년 연예부 댓글창이, 2020년 스포츠부 댓글창이 사라졌다. 네이버에서는 2023년부터 자살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창을 닫았으며, 다음은 2023년부터 뉴스에 대한 댓글창을 닫고 24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타임톡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그러나 아직 댓글창이 남아있는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댓글창 폐지에 대한 찬반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댓글은 기사와 별개로 새로운 또는 변형된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에 기사와 일괄 삭제 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표현행위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²⁸⁾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조사자 1,000명 중 SNS 댓글 서비스 중단에 동의하는 비율은 54%로 2020년에 67%이었던 것에 비하여 13% 감소하였으며, 악성 댓글의 폐지와 관리 강화 중에는 폐지(26%)보다는 관리 강화(44%)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는 댓글의 일괄 폐지보다는 관리 강화를 하며 댓글창 유지를 바라는 사람도 다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의 당사자를 향한 무분별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공론장 기능,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뉴스에 대한 댓글의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댓글 작성자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개인이고 댓글 중 상당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의견 표현이기에 현재의 언론중재제도로는 댓글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28) 정애령 (2019). 앞의 논문.

그런데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가 댓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다.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며, 그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작성되는 댓글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다. 댓글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피해 구제 방법으로서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나 포털사이트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일괄 삭제하거나 열람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언중위 2015년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댓글 게시관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인격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정이 가능한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때로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으로 악의적인 댓글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언론사에서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댓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응할 수 있다. 악의적인 댓글로 지목된 댓글을 작성한 자도 댓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삭제 조치가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댓글 작성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 댓글 게시자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추후보도 청구권의 한계 및 확대 가능성

가. 현행 법령상 추후보도 청구의 내용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나 행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하였다고 보도된 경우에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추후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서 더 나아가 추후보도 청구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보도 가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 주장과 입증책임의 문제, 처분권주의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죄판결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 간략히 추후보도문에 게재함으로써 오히려 사실관계를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민사판결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의 확대

행정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기업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공직자를 징계에 처한 사실, 또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보도에도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²⁹⁾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후에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공직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추후보도 청구를 통하여 명예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상 문제, 고소 취소,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거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 행정처분이 무효·취소로 판단받더라도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무효·취소로 판단받는 시점은 해당 보도가 나간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이미 경과한 후이기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 또는 징계 대상자로 보도된 기업이나 공직자가 해당 보도로 입는 피해는 형사 사건의 보도로 인한 피해만큼 중대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입고 거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대상으로 판단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손상된 이미지나 신뢰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해구제 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³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추후보도 청구권 개선 방안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29) 이예찬·이재진 (2020).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263-290.

30) 이예찬·이재진 (2020). 앞의 논문.

다.³¹⁾³²⁾

이에서 더 나아가 업무상 비위가 있어 징계대상자로 보도되었으나 징계사유(예컨대 직무 태만)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을 중징계에 처하거나 처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인한 피해만큼 중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 구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언중위 2015년 개정안에서는 보도가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언론사등에게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보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위 규정은 원 보도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현행 추후보도 청구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규정이지만, 그 내용상 현행 추후보도 청구의 대상은 아닌 위와 같은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내용으로 피해 구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 현행 추후보도 청구의 문제점

현행 추후보도 청구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범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권력형 범죄(뇌물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서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남용한 권한이 적법한 업무권한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³³⁾ 아예 기소 검토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기소는 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만 간단히 추후보도를 한다면 언론사등이 입증 가능한 사실을 보도하였음에도 마치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고, 독자는 보도대상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무고하게 수사,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이 보도했어야 하는 내용(실질적 범죄)을 보도했고,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에도 형식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후보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면 언론의 감시와 견

31) 이예찬·이재진 (2020). 앞의 논문.

32) 임오경 의원이 2024. 8. 22.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비위혐의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109-138.

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추후보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론보도 제도 안으로 추후보도를 포섭하고, 추후보도 절차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분쟁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보도에 해당 내용을 병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³⁴⁾

현재의 추후보도문 형태가 “위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므로 검찰이 모두 무혐의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형식으로 너무 간략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조정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판결문이나 결정문 전체를 근거자료로 첨부하도록 하고,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 등의 이유를 적시하여 신청취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추후보도문에도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등의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다면 객관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법리적 문제나 일부 증명의 부족으로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는 무죄 이유 등의 적시로 인한 부담으로 인하여 추후보도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의 행사기간 연장 문제

가.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 및 법적 성질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도 위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그러므로 위 권리행사기간을 초과하여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된다.

나. 민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이용의 한계점

민법 제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상의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에 기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는 가능하다. 민법 제764조에 기한 정정보

34) 윤진희 (2019). 앞의 논문.

도, 반론보도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어서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기간[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참조)]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64조에 기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필요로 하며 그 증명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한다. 민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해당 보도 내용이 특정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와 언론보도등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별적인 연관성’을 ‘피해자 특정’ 요건보다 더 넓게 해석하고 있기에 언론중재법과 민법 중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³⁵⁾ 또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는 행정 각 부처나 법원, 그 산하 기관인 청·실·국·과 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3, 4항 참조).

위와 같이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서는 민법보다는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여럿 있다. 그러므로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아쉬움이 남게 된다.

다. 청구기간 도과 현황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 사건 중 청구기간이 도과한 사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언론중재위원회 접수건수 대비 청구기간 도과 건수

(2016. 1. 1. ~ 2024. 12. 31.)

연도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건수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건수	비율(%)
2016	2,101	6	0.29
2017	2,113	28	1.33

35) 차기현 (202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등 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小考. <언론중재>, 제160호, 54-69.

2018	2,487	3	0.12
2019	2,281	29	1.27
2020	2,792	7	0.25
2021	2,906	38	1.31
2022	2,166	116	5.36
2023	2,773	53	1.91
2024	2,706	25	0.92
계	22,325	305	1.37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최근 9년 동안 이례적으로 청구기간을 초과한 사건이 많았던 2022년을 제외하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의 비율은 평균 0.94%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상담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도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조정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상담 단계 이전에 청구기간 도과를 인지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제척기간이 지난 피해상담현황

(2019. 1. 1. ~ 2024. 12. 31.)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간도과 상담건수	85	71	112	155	159	108
전체 상담건수	3,292	3,336	3,863	3,329	3,995	4,133
기간도과 상담건 비율(%)	2.6	2.1	2.9	4.7	4.0	2.6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 증가에 따른 청구기간 연장의 필요성

신문이나 잡지, TV나 라디오 방송이 언론보도의 주된 매체이고, 뉴스를 재방송하지 않던 시절에는 해당 기사가 게재되거나 방송된 이후로는 일부러 도서관을 찾아가서 열람하는 등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때에는 대부분 게재일, 방송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해당 기사를 다시 접하기 어려웠으므로 사람들도 차츰 해당 기사 내용을 잊을 수밖에 없어, 정정보도 등도 단기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언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은 어쩌면 지금보다 이때가 더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언론중재법에서 청구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은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언론 분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

기에 청구기간 연장은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도 청구기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³⁶⁾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현재는 인터넷 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기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있는 한 사실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내용을 검색하다가 본인 또는 지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인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과거 지면이나 유선 방송을 통한 보도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일회적, 일시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인터넷 기사는 삭제되거나 열람차단되지 않는 한 최초 보도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보도 매체가 현저히 늘어났다. 주로 신문, 유선 방송을 통해 언론보도가 유통되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가 주가 된 상황에서는 보도로 인한 피해의 지속성 때문에 청구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부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하였으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청구기간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언론사등이 장기간 정정보도 등 청구에 대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언론분쟁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 날로부터 6개월,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도의 제척기간은 합리적 수준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보도 매체와 보도 방법의 변화로 인하여 피해가 장기화되는 반면, 정작 당사자는 언론보도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은 종전처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있는 날로부터 6개월’ 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중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보다 먼저, 또는 병행하여 법원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조정 실무에서 가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면서 신청인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 내지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더라도 소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청인이 언론

36) 차기현 (2021). 앞의 글.

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또는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정보도 청구 등의 행사기간이 짧다 보니 신청인이 언론중재법상 청구 기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시점에 언론중재법상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가 생긴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참조), 이의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 ‘6. 사건 수 증가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 도과 문제’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건 처리에 드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으나,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소비하였을 시간이나 보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 중 청구기간을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절차 진행 중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나중에 법원에 제기한 소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도가 있음을 안 날(2018. 6. 7.)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의 조정 신청(2018. 9. 3.)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2018. 10. 24.)되고, 2018. 11. 9.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 2000153 판결³⁷⁾).

실무상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제척기간 도과를 우려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과 별개로 민사상 소제기도 해두어야 한다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소제기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조정 절차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비용 문제 등으로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청구

37) 미상고 확정.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에도 유사 사례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각하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기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민사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구기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조정 성립 이외의 사유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³⁸⁾ 덧붙여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언론중재법 제22조 제3, 4항), 이에 대해서는 소제기 간주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독자적 분쟁조정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³⁹⁾ 소제기 간주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가 적다는 현실도 고려한다면,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소제기로 간주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소제기를 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는 것⁴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 도과 문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근래 청구건수가 현저히 적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이에 위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한 해는 없고, 오히려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조정 청구건수 및 처리기간 준수/초과 처리 현황

(2018. 1. 1. ~ 2024. 12. 31. / 단위: 건, 일)

연도	총 청구건수	14일 이내 처리건수	14일 초과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2018	3,562	1,368	2,194	20.7
2019	3,544	1,550	1,994	18.1
2020	3,924	1,497	2,427	19.2
2021	4,278	1,839	2,439	17.9
2022	3,175	1,887	1,288	14.8
2023	4,085	1,383	2,702	21.5
2024	3,937	1,177	2,760	25.7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38) 정준영 (2023).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언론중재>, 제168호, 18-29.

39) 정준영 (2023). 앞의 글.

40) 정준영 (2023). 앞의 글.

그래도 평균 처리기간이 1개월을 넘지는 않아 법원에서의 소송기간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는 편이고,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법정 처리기간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되나, 법률에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기간 자체가 짧기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기간이 늘어나면 조정 불성립시 신청인이 제척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제척기간 도과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준비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한 점, 조정 성립 이전까지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14일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정보도 등의 청구 방법을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게 하고 처리기간을 7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⁴¹⁾도 있으나, 전체 청구건수와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현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시간 필요, 기일 조율 등 업무 처리상 현실적으로 14일의 기간을 준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중재위원 증원을 포함하여 인적, 물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현재의 14일 기간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중재위원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중재위원이 위촉되기까지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도 있다.

IV. 언론중재위원으로서 느낀 개선사항, 보완점 등

1. 동일, 유사한 내용의 기사에 대한 수십 건의 신청

가. 동일 신청인이 다건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보도 가치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보도하게 되는데, 신속한 보도에 집중하느라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급히 보도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로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를 다른 언론사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한다. 조정 사례 중에는 한 언론사가 가해자 A와 전혀 관련 없는 B의 사진을 SNS에서 임의로 가져와서 B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그 기사가 다른 언론사는 물론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 널리 퍼지면서 B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적인 요소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보도하

41) 언론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 (민형배, 2024. 6. 28.)

여 이에 대해 다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면 본인이 파악한 기사 전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것이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동일 신청인이 여러 건의 조정신청을 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동일 신청인 다건 신청 사례

(2022. 1. ~ 2025. 4.)

연도	신청인, 신청건수	처리 결과					
		취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결정	직권조정 결정	기각	각하
2022	A, 35건	30(30 ⁴²⁾)	5				
	B, 54건	54(52)					
	C, 23건	23(23)					
	D, 112건			3		68 ⁴³⁾	41
	E, 28건		2	2		24 ⁴⁴⁾	
2023	A, 62건	46(46)	15	1			
	B, 24건	7(7)		1			16
	C, 57건	12(12)	3	3		39 ⁴⁵⁾	
	D, 37건	2(2)	1	34			
	E, 42건	36(36)	6				
	F, 38건	15(13)	23				
	G, 48건	15(15)	31	1	1		
	H, 27건		16	3			
	I, 26건	7(6)				5 ⁴⁶⁾	11
2024	A, 32건		1			31 ⁴⁷⁾	
	B, 22건	11		6		5 ⁴⁸⁾	
	C, 23건		2			21 ⁴⁹⁾	
	D, 31건	30(30)	1				
	E, 30건	29	1				
	F, 23건		12	11			
2025	A, 48건	44(44)					2
	B, 36건	36(36)					
	C, 30건	29(29)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42) 괄호 안의 숫자는 피해 구제되어 취하된 건수를 의미함.

43) 기각 사유: 개별적 연관성 부족.

44) 기각 사유: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45) 기각 사유: 개별적 연관성 부족.

46) 기각 사유: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

민사소송에서도 동일 당사자가 다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상당수는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해야 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다수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보다 피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신청인은 다수의 언론사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바람에 일시에 여러 건의 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신청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인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소와 달리 수십 건의 신청이 한꺼번에 접수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위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이후에 접수된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어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해버리는 경우가 다수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언론사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언론사도 그와 같은 내용대로 조정하는 데에 큰 반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정 과정에서 처음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와의 조정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조정이 성립하자 이를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보도한, 또는 신청인이 직접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언론사와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른 언론사도 그 조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 특정은 신청인이 하도록 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도 따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한하여 선행 조정내용을 수용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조정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조정 내용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권고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조정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의 확대나 체척기간 도과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그 해결 방법도 마련한 뒤에 시도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다건의 신청에 대하여

위 다건 신청사례의 처리 결과 중 기각, 각하 사례와 같이 이미 체척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신청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내용을 문제로 삼는다거나, 그밖에 신청서 기재 자체로 조정 신청을 할 정당한 이익이

47) 기각 사유: 당사자 불특정, 개별적 연관성 부족.

48) 기각 사유: 당사자 불특정.

49) 기각 사유: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관련,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

없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예비심리를 통하여 각하, 기각함으로써 통상적인 조정절차를 통하는 경우보다 수고를 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불필요한 인력, 시간 등이 어느 정도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다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소송의 경우에는 인지를 납부해야 하고,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 2항 참조). 소장 등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할 수 있고, 담보제공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 참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남소를 획기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남소를 막는 효과가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경우에도 신청서 기재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사유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이전에 신청을 남발하지 않도록 부담을 지우는 방법(예: 신청수수료 부과)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신청인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금 지급 내용까지 포함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에 2023년도에 접수된 1,312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8건(2.1%)이며, 2024년도에 접수된 1,231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2건(1.8%)으로 그 인용 비율이 높지 않았다.⁵⁰⁾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피신청인도 작성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인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사 작성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가능한 14일 내에 양쪽 당사자가 낸 자료를 기초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정기일까지 기사의 진위 여부나 피신청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조정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다면 사실관계나 위법성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부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

50) 언론중재위원회 (2025). 2024년 연간보고서.

로 조정을 권유하기 어렵고, 그러한 권유가 적절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만으로 신속히 합의함으로써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간을 단축할 것인지, 합의는 포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까지 받도록 시도해 볼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정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포기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으로만 합의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배상 조정액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5개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의 조정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0. 1. 1. ~ 2024. 12. 31. / 단위: 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소값	10,000	60,000	500,000	300,000	300,000
최대값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평균값	4,009,394	2,095,636	2,562,857	1,660,870	1,450,000
중앙값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 4.

위 조정액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중재절차에서는 100만 원 정도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손해배상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규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신청인과 손해배상청구 수용에 여전히 난색을 표할 언론사 사이의 조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다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기획·제작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방송으로 인한 수익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액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사생활 침해 기사에 대한 구제 방법

수년 전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담당할 때에, 소송 당사자가 이전에 이혼

판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기사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었으나, 당사자는 본인에 관한 기사임을 당연히 알 수 있었고, 그 부부를 잘 아는 주변 사람이라면 그 뉴스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사자들이 판결을 읽었을 때 재판부가 누구의 어떠한 잘못을 이유로 이혼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는 편이었는데, 이 때문인지 판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해당 기사들 역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고, 어떤 내용은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으나, 당사자들은 본인에 대한 기사임을 당연히 알 수 있을 터였다. 본인들의 사생활을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데에 대하여 분노와 반감이 생길 것이고, 비난 댓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이며,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해당 기사를 읽었음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동일 신청인 다건 신청 사례 중 2025년의 A사건은 해당 기사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사에 나와 있는 정보와 사진(피해자 및 가해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근황, 범죄 장소 등)을 통해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특히 미성년인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기사임을 유추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것이었다.

위 기사들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기사에 사실성을 더하려면 당사자를 어느 정도 특정하는 요소를 기재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위 기사들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도 있어 정정보도·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생활이 공개되어 당사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고 때로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성범죄를 다룬 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알려짐으로써 피해자에게 해당 기사 자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그 기사들이 계속하여 인터넷에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해당 기사의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해당 기사들은 이미 보도되어 여러 날 게시됨으로써 당초 보도하려 한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

위 사례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되거나 조정절차에까지 나아갔다면 기사열람차단의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언론사가 신청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2025년의 A사건은 열람차단이 이루어져 대부분 취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법률 지식이 있다면,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은 없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구제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주장·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잘 알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도 열람차단 청구권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하면서 그 내용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는 기사삭제로까지 나아가야 하겠지만, 기사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기사의 역사적 가치도 고려하여 열람차단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권형돈 (2024, 12).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2024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서울.
- 문소영·김민정 (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6호, 151-182.
- 문소영 (2016, 12).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종합보고서, 서울.
- 문재완 (2012, 6).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서울.
- 박아란 (2019). 언론 자유와 기사삭제 청구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이슈>, 제5권 제5호, 1-15.
-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05-151.
- 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9-07).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75400&link_g_homepage=F
-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79-205.
- 손형섭 (2024). <4차 혁명기의 IT·미디어법>. 박영사.
- 양경승 (2015, 8).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언론중재위원회 2015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강원도.
- 언론중재위원회 (2025). 2024년 연간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24a). 중재위원 실무가이드.
- 언론중재위원회 (2024b). 202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24c).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109-138.
-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65.
- 이예찬·이재진 (2020).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263-290.

- 임상혁 (2021, 1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가능성 검토>. 2021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서울.
- 정애령 (2019).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143-177.
- 정준영 (2023).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언론중재>, 제168호, 18-29.
- 차기현 (202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등 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小考. <언론중재>, 제160호, 54-69.

제2주제 발제문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A씨는 오랫동안 언론사 기자로 일하다 퇴직했다. 2018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 수석 B씨가 국정농단 관련 재판부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B씨는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 없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허위 사실로 B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도 내용은 공적 인물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서 공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A씨더러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어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A씨가 구속되었을 때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¹⁾

만약 A씨의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했더라면 인신 구속, 명예훼손죄 확정,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확정과는 다른 해법, 이를테면 중재위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의 방식으로 해당 방송을 정정하거나 혹은 열람을 차단하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했을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은 그런 대안적인 해결 방식을 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언론중재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언론중재 제도는 도입 초기에, 언론 활동을 규제하는 데 쓰이거나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이 제도를 도입한 ‘언론기본법’이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1987년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 제

1) 동아일보 (2020.7.8.); 한국일보 (2020.8.21.); 조선일보 (2020.10.8.); 연합뉴스 (2024.4.17.); 법률신문 (2024.2.23., 2024.4.17.); 대법원 2024.2.8. 2020도14521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3.28. 2024머33271.

도는 오히려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신문법과 방송법에 계수되었고 1996년에는 반론권이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잘못된 인식표를 떼고 본연의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권리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찾았다. 여러 법률에 분산됐던 피해구제 제도를 2005년 ‘언론중재법’으로 체계화한 것이나 2009년 포털과 IPTV를 법 적용의 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구제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표 1> 참조). 또 피해를 야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삭제나 검색 차단 같은 방식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상당히 급격하고 본질적이며, 폭넓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인다. 현행법의 ‘언론’이라는 개념이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거나(양재규·김창숙, 2011),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 분류법에다가 새로 등장한 ‘인터넷’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황용석, 2014; 박아란, 2015),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매체의 ‘형태’가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피해구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언론정보를 획득, 공유하는 현상이 확대, 심화하는 현실에서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때나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시기의 매체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론정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정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2024)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뉴스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인쇄 미디어 16%, 방송 62%, 소셜미디어 44%,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는 79%로 나타났다. 2016년 그 비율은 각각 28%, 71%, 32%, 86%였다. 뉴스의 공급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뉴스 생산자’, ‘언론’의 개념의 변화로 이어진다. 광고비 부문의 변화를 보면 전통 미디어의 위상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1997년 한국의 총광고비 53,762억 원 중 신문·잡지·TV·라디오 등 전통 매체가 차지한 비율은 76.6%였다. 신문은 39.5%, TV는 28.8%였다. 당시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비는 0.7%인 376억 원이었다. 20년 후인 2017년 4대 전통 미디어의 광고비는 35,584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 111,847억 원의 31.8%로 줄어들었다. 대신 온라인 미디어의 광고비는

34.3%로 늘어났는데, 2021년 기준 그 비율은 각각 23.6%와 53.7%였다. 해당 미디어의 광고비와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가 해마다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쓰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주들이 특정 광고 미디어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 매체에 광고주들이 목표로 하는 이용자들이 와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선, 2023). 각 매체의 광고비와 그 비중의 변화는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80년 말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의 ‘언론’ 개념을 전수한 현행 ‘언론중재법’의 ‘언론’의 개념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중재 제도에 있어서 ‘언론’은 ‘언론기본법’ 시기나 ‘언론중재법’ 시기를 불문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의 ‘언론’ 규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 법의 관할에 두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언론기본법’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매체 중심으로 규정된 ‘언론’ 개념은 오래전부터 법률이 작동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매체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거나, 기능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양재규·김창숙, 2011; 황용석, 2014; 박아란, 2015, 2025). 이를테면 ‘언론중재법’의 ‘언론’은 관련 법에 규정한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을 의미하며 포털은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돼 ‘언론 등’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나 영향력 차원에서 기성 ‘언론’을 능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뉴스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는 ‘시사/뉴스 정보’ 플랫폼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언론중재 제도에 의한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법의 ‘언론’ 규정은 기성 언론은 물론 소셜미디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홈페이지까지 ‘언론사’로 규정해 공정한 선거 보도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 너무 무디다. 가히 입법적 방치라고 할 만하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공직선거 시기에 해당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 기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설치·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사가 제작한 동일한 영상이라도 방송매체를 통해 노출된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구조다.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인터넷언론사’는 ‘신문법’에 규정한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이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 즉,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언론사’ 규정은 2004.3.12.개정·시행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이후 20여 년간 입법적으로 치유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시사 정보의 원천으로써 활용하는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아예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의 응답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언론사의 인식 조사에서는, 유튜브가 기성 언론에 이어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 2위로 선정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1위로 ‘등극’하기도 했다. 양재규(2022)에 따르면 2021년 한 조사에서 디지털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40.8%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인식하였고, 언론성을 부정한 응답은 26.2%였다. 양재규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미 대세 미디어로 자리를 잡았고,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주요 선거 채널은 유튜브였다. 문제는 위와 같은 유튜브에 대한 언론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내지, 현실 상황이 법적 지위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 유튜브는 언론이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한데, 원인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의 언론 관련 법률 체계에 있다는 것이다(양재규, 2022).

한편 언론중재위원회(2024)에 따르면, 언론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존 언론과 동일하게 해당 법원의 ‘언론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했다. 판결의 내용을 보더라도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을 언론사와 동일한 지위에 놓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판결 법리를 적용해 정정보도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했다. 인용된 경우의 정정보도문 형식은 기성 방송사 대상 정정보도문 형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언론중재위원회, 2024).

다섯째,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는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과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한 인터넷의 발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용상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도 기존 법리에 따라 자유와 책임이 부여되지만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우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용이성, 신속성, 전파성,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며 그에 대한 구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웹에 보존되고 언제나 검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는 정보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피해구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기성 언론의 경우 언론 피해구제 법제는 1회적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쳤으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 쉽게 전파되고 검색되며 시간제한 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제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박용상, 2025a, 34-36).²⁾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나 입법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입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2009년 포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언론 등’의 범주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언론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종합보고서”를 펴내고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당시 광상도 의원실을 통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외에도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피해구제의 방법과 내용을 확대하려는 일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입법안 중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이미 권형돈(2024)이나 김주용(2025) 등 일련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제안들이 제시된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향후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언론중재 제도를 위한 입법 개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중재법’ 제정·시행 이후 국회에 발의된 전체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요한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인터넷에서 개인 이용자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에게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법 제44조의2),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법 제44조의10),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받아내는 방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그것이다(박용상, 2025a, 36).

2.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는 1980.12.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에 도입되었다. 동법은 그 목적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에서 ‘언론’은 “신문, 통신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말하는 것, ‘언론인’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 활동에 참여하여 사상 및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언론’은 미디어 기업으로서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한편, ‘언론의 자유등’을 규정한 동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국민 일반이 가진 표현 자유 활동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양재규·김창숙(2011)은 언론기본법의 ‘언론’에 대한 정의는 헌법상의 언론 개념 및 언론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언론의 개념과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작위적이라고 비판한다(양재규·김창숙, 2011, 62-64).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언론’(제2조 제1호)이나 ‘언론사’(제2조 제12호) 규정은 언론기본법의 해당 규정 방식이나 내용과 같다.³⁾ 언론중재법은 2009년 IPTV와 포털을 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을 한 후 별다른 입법적 성과 없이 유지됐다.⁴⁾ 자연스럽게 이 법의 언론 개념 역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언론중재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적 변화

시기	관련법/결정	내용	비고
1981	언론기본법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반론권 제도 도입 언론중재위원 (30-60)	언론기본법제정(1980.12.31.)
1987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반론권제도 계수 추후보도청구권 신설 언론중재위원 (40-70)	정간법 제정(1987.11.28.)
1991	종합유선방송법	중재제도 도입	종합유선방송법제정

3) ‘언론중재법’의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4) 박아란에 따르면 ‘언론’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섭하면서 발전한 개념인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범주를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한정된 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를 법 적용 대상으로만 추가하여 포섭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언론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한다.(박아란, 2015).

		제45조(정정보도청구권)	(1991.12.31.)
1996	정기간행물법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 직권중재결정제도 도입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인정 국가·지자체, 기관단체 반론권 인정 불복절차 도입 언론중재위원 (40-80)	정간법 개정(1995.12.30.)
1997	공직선거법	선거보도관련 반론보도청구권 도입 제8조의3(방송), 제8조의4(정간물)	공직선거법 개정(1997.11.14.)
2005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권’ 도입 조정 외 ‘중재’ 도입 손해배상 조정·중재 인터넷신문 조정·중재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고충처리인 도입 언론중재위원 (40-90)	언론중재법제정(2005.1.27.) 일부 조항 위헌결정(헌재 2006.6.29. 2005헌마165등)
2006	헌법재판소결정	고충처리인제도, 위헌아님 고의, 과실없는 정정보도, 위헌아님 정정보도청구 가치분절차심판, 위헌 부칙 소급효, 진정소급입법으로위헌	헌재 2006.6.29. 2005헌마165등
2009	언론중재법	포털·언론닷컴·IPTV 조정·중재 정정보도청구소송-민사소송법적용	언론중재법개정(2009.2.6.)
2011	언론중재법	법문장 한글로, 어려운 용어 쉽게 ⁵⁾	언론중재법개정(2011.4.14.)
2018	언론중재법	언론중재위원 결격사유 일부개정 ⁶⁾	언론중재법개정(2018.12.24.)

자료: 이승선(2011, 8-13) 재구성

언론의 자유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설령 국민을 나쁜 사상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서 안 되는데, 비록 언론보도가 허위일지라도 책임을 묻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기 통치’로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도 있다. 어떤 표현이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표현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기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표현이 보호받는다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화자의 권리가 아니라 청자의 권리가 된다(양재규, 2025, 142-143). 박용상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 규제를 주창하는 견해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기능화에 불가결한 제도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해

5) 제1조(목적)의 ‘명예나 권리’를 ‘명예 또는 권리’로, 제2조(정의)의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언론이라 함은’을 ‘언론이란’으로 바꾸는 정도의 개정이다. 또 ‘법익’(法益), ‘공적’(公的), ‘정보원’(情報源) 등 일부 용어에 한자를 병기했다.

6)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2항 제4호의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개정한 것이 전부다.

왔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자유로서 소극적 성격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결정으로서 모든 법 영역에 실현되어야 할 객관적 가치를 가지며, 국가 전체적 질서에 구성적 기능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모든 국면에서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진다고 본다. 박용상에 따르면 ‘언론’의 헌법적 지위는 여론 형성에 참여한다는 언론의 기본적 기능과 관련해 고찰되어야 한다(박용상, 2013, 103-105, 10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⁷⁾ 일반적으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내용으로서, 의사 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는데,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 표현 또는 의사 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음반이나 비디오는 물론⁸⁾ 광고물⁹⁾,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이나 대화방도 헌법상 표현 자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¹⁰⁾

위와 같은 ‘언론’의 기능이나 자유 보장의 의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우리 역사에서 사용돼 온 ‘언론’의 기능, 개념과 괴리가 사실상 없다. 중국 고전을 비롯한 한국 역사 속의 언론 개념을 연구한 김영주는 ‘언론’을 중국 고전에서 사용된 바대로 ‘어떤 논제에 관해 바른말 또는 결점을 들어 비난·공격하는 말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일(言語議論)’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조선시대의 경우 ‘언론’의 유사 용어로 ‘간쟁’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영주는 우리 선조들이 일상적 용어인 ‘언론’이라는 단어 대신에 ‘간쟁(諫諍)’이라는 단어를 ‘언론’과 유사 개념으로 삼국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줄기차게 사용했다고 본다. 물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는 그 이전 시기와 달리 ‘언론’이라는 단어 역시 ‘일상적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조선왕조실록’에 언론이라는 단어가 508건, ‘승정원일기’ 1,174건, 신하들의 상소문 모음집인 ‘간의등록’에 366건이 등장한다는 것

7) 현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8) 현재 1993.5.13.선고 91헌바17결정

9) 현재 1998.2.27.선고 96헌바2결정

10) 현재 2010.2.25.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결정

이다. 이를 통해 김영주는 ‘언론’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 일상적 용어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언론’이 언책자(言責者)인 대간이나 소속 관청인 대각(臺省)과 관련해 나타나거나, 상소문에 나타날 때는 ‘군주나 정부의 정치 득실을 비판하는 언론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언론’의 의미는 고대 중국 사서에 사용된 ‘단순히 말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등을 다양하게 함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영주, 2009, 53-54).

최정호(1998)에 따르면 ‘언론’의 용어는 원래 ‘말’에서 출발해 ‘매스 미디어’로 외연이 확대된 개념이다. 첫째 단계로 언론은 ‘말’ 또는 ‘말하다’, ‘의논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속어로 언론의 가장 오래된 의미이다. 둘째 단계는 19세기 중반 이후 한자 문화권이 서양 문화를 수용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 ‘언어를 통해 사상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이때 언론은 구두언어로서 서양어의 ‘speech’, ‘discussion’, ‘logos’, ‘rhetoric’, ‘oratory’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다. 셋째 단계는 점차 ‘인쇄·출판’을 뜻하는 서양어의 ‘press’나 ‘printing’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다. 넷째 단계는 언론을 인쇄·출판의 결과물인 ‘신문(newspaper)의 통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언론 개념은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정보전달의 대중매체(mass media)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최정호, 1998; 김영주, 2009, 52-53 재인용).

김영희·윤상길·최운호(2011)는 ‘언론’을 시사적인 문제와 현상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을 뜻하는 저널리즘(journalism)의 우리말 표현으로 사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뉴스와 정보 제공(환경감시), 의견제시와 논평(상관조정), 교육, 오락, 광고 등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다. 이들에 따르면 ‘언론’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개화기에 근대적인 신문이 출현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저널리즘 활동, 곧 시사적인 문제나 사실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논설을 분석한 이들에 따르면, 이 신문에서 ‘언론’은 본래의 의미로도 쓰였으나 점차 저널리즘 활동 곧 시사적인 문제나 사실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김영희·윤상길·최운호, 2011, 82, 99-100).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불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매스 미디어로서 언론사나 언론인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아우르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도 이 기본권에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언론·출판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

관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¹¹⁾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취코 동영상’ 사건에서, 언론매체의 보도는 국민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언론매체가 수행한 이러한 기능과 역할과 더불어, 개인의 표현행위도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매체가 다양해진 환경에서 개인은 적극적으로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표현도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개인의 인격 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¹²⁾

언론중재법 시기에 ‘언론’의 허위 보도를 이유로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간단없이 전개되었다. 양재규(2025)는 ‘허위 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라는 연구에서 1982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선고된 언론의 허위 보도 관련 67건의 민사 판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대법원에서 처음 소개된 ‘악의성의 법리’는 1988년 대법원이 도입한 ‘보도의 상당성’ 법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있다. 보도의 상당성을 갖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악의성’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단계로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면책 결정이 이뤄지고, ‘악의성의 법리’는 보도의 상당성이 없는 때에만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보도의 상당성’과 관련해 다섯 가지 요소, 즉, ① 적시된 사실의 내용 ② 표현 방법 ③ 근거 자료의 신빙성 ④ 사실 확인의 용이성 ⑤ 보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¹³⁾ 또 그에 따르면

11) 현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안전 보장은 다 같이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범위에서 알권리를 보호할지에 대한 한계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통치권자와 피통치자가 이념상 자동적(自動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자유스러운 표현 체계의 유지와 개인의 자기실현을 확보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사회구성원의 정치적·사회적인 결단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변혁과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는 이 결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한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2) 현재 2013.12.26.선고 2009헌마747결정

‘악의성’ 유무 판단의 근거로 법원은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¹⁴⁾

‘언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이해와 활용, ‘언론’을 개인의 자기실현이자 민주주의의 자치정체(自治政體)의 골간으로 파악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판단에서 공적 존재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의 제기 등에 대해 상당성 수준을 매우 완화하고 있거나 악의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법적인 차원에서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의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 채널이 수행하는 여론 형성과 공적 토론의 기능이다. 김주용(2025)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특히 시사나 정치 채널 콘텐츠는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새로운 저널리즘 가능성을 열었고,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 관행은 저널리스트의 자격이나 역할, 뉴스 조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뉴스의 취재 과정, 뉴스 가치 등에 있어 전통 저널리즘과 다른 관행을 갖고 있는 개인 미디어 유형 온라인 저널리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용자들의 뉴스 이용 현황과 소비 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채널이 온라인 공간에서 실제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확장된 저널리즘 영역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그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자들의 활동을 저널리즘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13) 상당성의 법리와 관련해 양재규는 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몇 가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요구되는 보도의 상당성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 둘째, 공적 존재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상당성 수준이 매우 완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점, 셋째, 근거 자료의 신빙성과 관련해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수위가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양재규, 2025, 168-169).

14) 양재규에 따르면 악의성의 법리는 언론의 보도가 허위이고, 상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지만 언론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법리가 최초로 적용된 사건은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전북도지사 관련 허위 브리핑’ 사건이다. 양재규에 따르면 악의성이라는 개념은 상당성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며, 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악의성은 미연방 대법원의 ‘현실적 악의’의 취지 및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허위라는 것을 심한 부주의, 다른 표현으로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재규에 따르면 악의성의 부존재를 이유로 면책 판결을 한 어느 것에서도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판시했을 뿐 ‘악의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양재규, 2025, 148, 169).

이른바 ‘좋은 저널리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콘텐츠의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 등 객관성 규범의 준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이 관련 채널의 생산자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 수준에 비춰볼 때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저널리즘 규범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주용, 2025, 66-70).

언론중재위원회(2025b)에 따르면, 최근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73.8%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유튜브 채널의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가 이미 ‘언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공식 계정으로 운영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87.4%, 전현직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시사 채널에 대해서는 63.5%가 이를 ‘언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5a). 2018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가 ‘뉴스 정보 플랫폼’이라는 인식은 52.5%, 2019년 실시된 조사에서 시사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언론’이라는 응답은 50%였다. 2019년과 2020년에 실시된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는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유튜브’가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표 2> 유튜브와 ‘언론’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

조사기관	조사 명	일시	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2025	소셜미디어가 ‘언론’ 역할 수행 65.1% (언론사 공식 계정 87.4%, 전현직 언론인의 시사채널 63.5% / 개인 유튜버/BJ 운영 시사채널 22.8%)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언론수용자 조사	202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시사 정보 이용률 18.4% (이용한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98.7%) / 2023년 이용률 25.1%, 2022년 이용률 26.7%, 2021년 24.4%, 2019년 12.0%, 2018년 6.7%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2023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53% / 46개국 평균 30%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2021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44% / 46개국 평균 29%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	유튜브 콘텐츠 중 ‘뉴스/시사정보’ 이용률 42.3%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2020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 45% (2019년 38%) / 40개국 평균 27%
시사IN	시민조사	2020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 - 유튜브 1위

시사N	시민조사	2019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 - 유튜브 2위 (1위는 JTBC)
미디어오늘	시민조사	2019	시사 유튜브 채널이 언론에 해당하는가 - 언론이다 50%, 언론이 아니다 33% ¹⁵⁾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2019	유튜브에서 지난 일주일간 뉴스 관련 동영상 시청 40% /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26%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인식 조사	2018	유튜브 콘텐츠 중 ‘시사/정보’ 이용률 35.5% 유튜브는 뉴스 정보 플랫폼이다 52.5% ¹⁶⁾

유튜브 뉴스 이용의 속성을 연구한 최지향(2024)에 따르면, 유튜브 과이용자 그룹은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이 높으면서도 기성 언론을 통해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비시민적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정치 양극화 정도도 높았으며,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 역시 다른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연·김동윤·김현(2022)에 따르면, 유튜브 뉴스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민(2019)은 제도 언론과 유튜브 정치 채널들은 상호 공생 또는 상호 협조하면서 동시에 저널리즘적 정당성과 권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유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주류 혹은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혹은 레거시 미디어와 단순히 대립 또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때로는 상호 협력하고 때로는 상호 공명하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 저널리즘 논의가 적어도 유튜브로 인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유용민(2021)은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속에서 기성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 정보를 습득하는 이용자들은 여전히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선희(2020)의 연구도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즉, 전통적 저널리즘이 유튜브를 배타적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활용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되, 단기적인 수익보다 언론사의 정체성과 포지셔닝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을 모색한다면 저널리즘적 성취를 넘어 수익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이 그러한 채널을 신뢰하는 이유를 탐색한 오해정·최지향(2022)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저널리즘 연구에서

15) 미디어오늘과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 2019년 10월 27~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결과(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 ARS 자동응답시스템)

16) 양정애·오세욱(2018)은 “유튜브는 2006년부터 시작된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드디어 주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언론 신뢰를 구성한다고 봤던 공정성, 정확성, 완전성 등 뉴스 품질을 높게 평가할 때 신뢰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정파성 기대부합 인식이 높을 때 역시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파적 미디어인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뿐 아니라 유튜브 지상파 채널, 유튜브 종편 채널 이용자도 정파성 기대부합 인식이 높을 때 신뢰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정미(2020)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공론장 활성화 기능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유튜브 저널리즘은 첫째, 정보 제공 기능, 둘째,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내는 기능, 셋째, 긍정적 공론장으로서의 회복, 넷째, 사회통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저널리즘으로써 기능 수행, 다섯째, 경제, 문화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다. 금준경(2018)이 지적하듯이 유튜브가 이러한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언론사의 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는 시사, 정치 혹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기성 언론과 유사한 공적 논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 기능을 주목할 때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언론중재법의 체계 내에서 소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입법적 체계가 언론중재 제도의 성공적인 작동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 방식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해 보게 한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조정 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대상을 보다 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일부 채널, 즉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콘텐츠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언론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고 조정신청 및 각종 보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실무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25b, 48-49; 김주용, 2025, 52; 양재규, 2022). 국회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하려는 입법 개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위와 관련해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입법안의 내용과 특성,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3. 2005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특성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주체의 노력과 협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양경승 변호사에게 의뢰해 1998년 전문 45개 조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하고, 2000년 정기 세미나를 통해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적 논의와 축조 심의를 통해 마련한 관련 법안 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는 국회와 각 정당에 배포했다. 국회의 노력도 작동했다.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27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4년 10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서를 접수했고, 김재홍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 문광위에 상정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언론인권 센터’는 공동으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서를 2004년 11월 29일 접수했다. 다음날 청원서는 임종인 의원의 소개로 국회 문광위에 회부되었다. 이 무렵 국회에는 문병호 의원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천영세 의원의 ‘언론피해구제법안’, 정병국 의원의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언론피해구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각 행위 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이승선, 2011, 9-10).

언론중재 제도 도입 30주년에 즈음해 이승선(2011)은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의 주요 성과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한국 사회에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를 제거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언론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자발적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나,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구제 방식, 이를테면, 법 조항에 근거한 보도와 손해배상 외에도 유감 표명, 기사 수정, 재방영 금지, 기사 삭제, 검색 제한 내지 정정보도문의 검색 허용, 취재보도 개선 약속 등의 방법이 대화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 둘째,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 신장과 더불어 언론중재 제도가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방법으로 정착되는 성과를 낳았다. 셋째, 반론권과 언론중재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였다. 넷째, 반론권 본래의 취지대로 정보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저널리즘의 취재보도 규범의 착근에 기여했다는 점이다(이승선, 2011, 16-18).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선(2021)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추정하고 있다. 첫째, 2009년 이후 법률안을 통해 개정하려던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광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입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둘째, 국가기관 간의 관할권 조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입법안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기구들의 활동이 확산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활동이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넷째,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법률안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수용이 안 된 기존의 제안을 재탕, 삼탕 단순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이승선, 2021, 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하려는 여러 차례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내용도 신설되거나 기존의 권리를 정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검토했다. 첫째,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매체나 범위를 확장하려는 내용, 둘째, 피해구제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권리를 확장하는 내용, 셋째, 언론인이나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나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넷째, 정정보도문의 작성과 게재 방식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실행과 관련한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2025년 6월 5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모두 72개다. 회기별로는 17대 국회 11건, 18대 국회 10건, 19대 국회 9건, 20대 국회 12건, 21대 국회 23건 그리고 22대 국회 7건이다. 분석은 이승선(2021)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저장된 회기별 입법안과 검토 보고서 등을 출력해, 분석했다.

아래 <표 3>에서 보듯, 언론중재법 제정 직후 유튜브 채널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17대 국회 박찬숙 의원안(2005.11.1.), 노웅래 의원안(2005.11.8.)은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 신문의 범주로 포함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발의된 김승수 의원안(2022.12.27., 2024.7.17.)의 내용도 17대 국회의 박찬숙, 노웅래 의원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나아가 17대 국회의 박찬숙 의원안(2006.7.7.)과 최구식 의원안(2006.12.1.)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과 ‘신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기사

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박찬숙 의원안, 2006.7.7.),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상시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또는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인정된 매체(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 (최구식 의원안, 2006.12.1.)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성안 자료를 토대로 2016년 발의된 광산도 의원안이다(2016.10.28.발의). 검색서비스를 비롯해, 피해구제가 결정된 언론보도가 복제, 전파되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까지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법률안 제33조의6에 신설된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표 3>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법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제언

발의일	발의	기존	개정안	비고
2005.11.1.	박찬숙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005.11.8.	노웅래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 =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006.7.7.	박찬숙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과 ‘신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006.10.10.	노웅래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 =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신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홈페이지	
2006.12.1.	최구식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상시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또는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인정된 매체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	
2008.12.4.	성윤환	언론사의 언론보도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	
		정기간행물	신문·잡지 등 간행물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신설
		언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등’)	
2008.12.24.	나경원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신설
2009.1.13.	위원회	-	IPTV, 인터넷뉴스서비스(블로그, 1인미디어, 카페제외) ¹⁷⁾	신설
		언론사의 언론보도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2016.10.28.	곽상도	보도 또는 매개(언론보도등)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언론보도등)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에 대해 수정,보완,삭제,필요한 조치청구 ¹⁸⁾	신설
		-	검색서비스 : 구제 결정, 재판 결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구제청구 ¹⁹⁾	신설 링크댓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을 하는 언론등의 게시판의 댓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해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댓글
		-	피해구제 결정된 언론보도가 복제·전파되어 게시물이 소재한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 관리자, 운영자를 상대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정정,피해구제위해 인증위에 조정신청(게시물 존재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신설
		-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 인증위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안 제33조의6)	신설
2021.6.9.	박정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언론등 ²⁰⁾	신설
2022.12.27.	김승수	언론=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언론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2023.5.22.	윤두현	언론	‘언론’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	
		언론사	‘언론사’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	
2024.7.17.	김승수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 이하 “언론보도등”)	
2024.8.22.	임오경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권리는 주로 ‘열람 차단 청구권’이나 ‘검색배제 청구권’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도 ‘기사 게재중지 조치 청구권’(노웅래 의원안, 2006.10.10.), ‘명백한 오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을 청구하는 권리’(최민희 의원안, 2013.3.21.), ‘언론보도 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 청구권’(김원이 의원안, 2020.12.1.) 그리고 최근 발의된 김장겸 의원안의 ‘조정 대상 기사 삭제요청권’이다(2025.3.10.).

2016년 발의된 광상도 의원안은 정보통신망의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 검색서비스 피해 보도와 댓글, 복제·전파물 링크 삭제 청구권, 인격권 침해배제와 검색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권, 언론보도 등에 대한 언론사 운영 게시판의 댓글 삭제 등 조정 신청권, 피해구제 결정 보도 복제·전파된 사이트·게시판의 게시물 삭제 등 조정 신청권을 제안했다.

<표 4>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피해자의 권리 신설과 확장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06.10.10.	노웅래	기사 게시중지조치 청구권 ²¹⁾
2013.3.21.	최민희	명백한 오보 언론중재위 확인 청구권 ²²⁾
2015.3.25.	김한표	기사삭제 청구권 ²³⁾
2016.10.28.	광상도	정보통신망의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 ²⁴⁾ 검색서비스 피해보도와 댓글, 복제·전파물 링크삭제 청구권 ²⁵⁾ 인격권 침해배제와 검색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권 ²⁶⁾ 언론보도등에 대한 언론사 운영 게시판의 댓글 삭제 등 조정 신청권 ²⁷⁾ 피해구제결정 보도 복제·전파된 사이트·게시판의 게시물 삭제 등 조정 신청권 ²⁸⁾

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인 이 법률안 제2조 제18호로 신설된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시행령’은(시행 2020.3.3., 대통령령 제30509호)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규정하고 있다(본조신설 2009. 8. 5.).

18) 해당 법률안에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안 제2조 제22호).

19) 해당 법률안에서 ‘검색서비스’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안 제2조 제23호). 법률안에서는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해당 보도문 및 그 보도물에 달린 댓글,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지체없이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 제1항, 제2항).

20) 해당 법률안은 ‘언론등’을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는 면책되도록 규정했다(안 제30조 제6항).

2019.5.21.	신동근	열람차단청구권 ²⁹⁾
2020.7.31.	신현영	열람차단청구권 ³⁰⁾
2020.12.1.	김원이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방지 청구권 ³¹⁾
2021.8.25.	위원장	열람차단청구권 ³²⁾
2021.11.11.	김의겸	검색배제청구권 ³³⁾
2025.3.10.	김장겸	조정대상 기사 삭제요청권 ³⁴⁾

- 21) 해당 법률안은 뉴스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의 매개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게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게시 중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사가 게시된 날로부터 45일을 경과하면 안 된다. 언중위는 피해자와 언론사등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심리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이유 있을 때 뉴스서비스제공자등에게 기사의 게시 중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안 제33조의2).
- 22) 해당 법률안의 제15조의2(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의 특례)에 따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명백한 오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언중위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고, 명백한 오보로 판단한 경우 그 다음 날 해당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정정보도문을 명시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 정정보도문은 언중위가 청구인과 협의해 작성한다. 언론사등은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게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언론보도등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안 제15조의2,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2호).
- 23)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삭제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15조의2).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이후 국회에 발의된 다른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삭제 청구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24) 해당 법률안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위법하게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이다 (안 제33조 제1항). 또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에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하게 부정확한 것이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등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안 제33조 제2항).
- 25) 해당 법률안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에 따르면, 인격권 피해자는 삭제나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보도 및 그 보도에 달린 댓글 또는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6)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인격권 침해배제청구나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조정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안 제33조의3 제1항).
- 27)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인격권의 피해자는 언론사등의 게시판에 게시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안 제33조의3 제2항).
- 28)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삭제나 정정 등 피해구제가 확정된 언론보도가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운영자를 상대로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이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내용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구제 결정이나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필요한 조치에 관해 직권조정안을 작성해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안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안 제33조의3 제5항, 제6항).
- 29)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사등의 책임이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몇 가지 특성이 현저하다. 첫째,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체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속 정당의 이념과 관계 없이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발의된 특징이 있다. 둘째,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문광부에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대체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다. 셋째,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로 하여금 그 수용 여부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
- 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제17호의2).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다. (안 제17조의2 제1항)
- 30)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제17호의2).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인데 그 내용은 위 신동근의원안(2019.5.21.발의)과 같다(안 제17조의2 제1항).
- 31)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제17조의3(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 구제)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17조의3).
- 3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인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性的)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다.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기사열람차단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17조의2).
- 33) 해당 법률안에서 ‘검색배제’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는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34) 해당 법률안의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 언론사 중 일방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되면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 언론사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피해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적 임시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3조의2).

<표 5>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사등의 책임·의무 강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11.7.14	정부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조정신청 표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2.12.6	정청래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격권 침해, 손해액 3배 이내 배상
2013.3.21	최민희	명백한 오보 정정보도문 발송, 게재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3.6.28	정부	정정보도청구등에 알람 표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7.4.25	주호영	정정보도청구 조정신청 표시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7.8.4	송희경	언중위, 언론사등 고의·중과실 허위보도 시정명령 요청, 문체부 시정명령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8.5.9	강효상	언중위, 고의·중과실 가짜뉴스 언론보도 시정명령 요청, 문체부 시정명령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0.6.9	정청래	악의적 언론보도, 3배 이내 손해배상
2020.8.7	정청래	언중위, 고의·중과실 허위보도, 시정명령 요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2.4	최강욱	언론위원회 시정명령 (위반시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비방목적 거짓, 왜곡보도, 평균매출액 이상 손해배상 ³⁵⁾
2021.3.19	민형배	정정보도등 청구받은 언론사 수용여부 통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5.7	김영호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정보도 표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6.9	박정	고의·중과실 허위보도, 손해 3배 이내 배상 정보통신망법 정보사업자인 언론등의 고의·중과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 3배 이내 배상
2021.6.21	윤영찬	고의·중과실 허위언론보도, 손해 3배 이내 배상
2021.6.23	김용민	고의·중과실 허위·조작보도, 손해 3~5배 배상 기사제목 허위·조작보도,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정정보도청구, 언론사 3일 이내 수용여부 통지, 인터넷기사 제목 본문에 표시
2021.8.25	위원장	고의·중과실 허위·조작보도, 손해 5배 이내 배상
2023.2.6	김홍걸	언론사, 인용보도 관련한 지침 마련해 자율적으로 준수
2024.5.31	정청래	악의적 언론보도 인격권 침해, 손해 3배 이내 배상
2024.6.18	김영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정보도등 통지, 표시의무 (위반시 3천만원이하과태료)
2024.7.17	이정현	정정보도청구등 받은 기사제공언론사 이 사실 게재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시정권고의 실무와 관련한 제안으로서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개정이 많았다. 징계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추후보도 청구권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거나, 추후보도 청구권 신청 기간을 해

35) 해당 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2.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3.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안 제30조의2제2항).

당 사실이 종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또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원래 보도의 자리에 같은 크기로 게재하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표 6>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시정권고 관련 주요 내용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05.7.27.	심재철	정정보도청구-민사집행가처분 삭제 / 시정권고와 공표 요건 강화
2005.10.27.	박찬숙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 소제기
2006.11.9.	전병헌	추후보도청구기간, 형사절차 종결사실 안날 3개월 / 정정보도청구소송, 민사소송법 절차 재판
2008.11.21.	한선교	직권조정불복시 서면 중재부에 이의신청
2008.12.4.	성윤환	시정권고 삭제 /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절차 재판
2008.12.5.	이혜훈	추후보도신청, 형사절차 안날 3개월/정정보도 통상절차
2008.12.24.	나경원	시정권고 삭제 /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절차
2009.1.13.	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절차 / 피해자 아닌 제3자 시정권고신청 규정 삭제
2015.1.30.	이재영	시정권고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추가
2015.11.17.	우윤근	정정보도청구 등, 언론소송 가능 지법 합의부도 관할
2017.4.25.	주호영	추후보도청구, 6개월로 개정
2017.8.4.	송희경	추후보도청구, 6개월로 개정
2018.5.9.	강효상	추후보도청구, 6개월로 개정
2018.11.29.	박광은	언론 매체 특성 반영한 정정보도 세부기준 규정
2019.10.18.	한선교	정정·반론보도청구기간, 안날 6개월, 보도일 1년 이내
2020.7.10.	정청래	정정·반론·추후보도 원보도와 동일 지면, 분량
2020.8.20.	박광은	정정보도 게재방식 구체화,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0.11.19.	김영호	정정보도 대상 구체화,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2.19.	송기현	비위혐의 행정처분 언론보도 - 추후보도청구권 허용
2021.3.19.	민형배	언론사 정정등 신청,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확대
2021.3.23.	유정주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추후보도 청구권 포함
2021.6.23.	김용민	정정보도청구, 안날 6개월, 보도일 3년 이내 / 정정보도청구 언론사 3일 내 수용 여부 통지 정정보도청구, 인터넷기사 제목, 본문에 표시 / 인증위 산하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 설치, 운영
2021.8.25.	위원장	정정보도청구기간, 안날 6개월, 보도일 1년 이내 / 정정보도청구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2023.1.5.	정우택	피해자 관할변경 신청, 피해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정
2023.6.29.	김승남	인증위,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접수후 해당 기사 접근차단하는 등 '입시조치' / 30일 이내
2024.5.31.	정청래	정정보도청구 안날 1년, 보도 2년 / 정정보도 등 원보도와 크기, 분량 동일
2024.6.18.	김영호	정정보도 청구 수용시 원보도와 같은 크기, 분량
2024.6.28.	민형배	정정보도청구 서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화 인증위 조정기일신청 접수일 14일에서 7일로 단축
2024.8.22.	임오경	행정처분, 추후보도청구포함

아래 <표 7>에서 보듯이, 중재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거나, 중재위원의 규모를 120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다. 또 중재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다거나 중재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중재위원의 추천권을 입법, 사법부 등으로 다양화하자는 내용도 발의안들에 여러 번 담겼다.

<표 7>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주요 내용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05.7.27.	심재철	고충처리인 임의 규정화 / 중재위원 40-110
2005.11.25.	이재응	중재위원장 상임 / 운영재원 국고(←방송발전기금)
2005.11.30.	김재윤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2008.12.4.	성윤환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추가 / 고충처리인 삭제 시정권고 삭제 /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2008.12.24.	나경원	고충처리인 삭제 / 시정권고 삭제
2009.1.13.	위원회	피해자 아닌 제3자 시정권고신청 규정 삭제
2009.3.20.	장세환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2010.7.30.	정부	법령용어 순화, 문장조정, 간결화·명확화
2011.11.22.	김재윤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2011.12.30.	진성호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결격사유 ‘언론사 소속 현직 언론인’ →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2012.7.27.	김재윤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2012.9.10.	최민희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원 추천보완 / 중재위예산-국가일반회계
2012.12.6.	정청래	법률명 변경(언론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위-언론분쟁조정위원회
2013.6.3.	박창식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장 대통령 임명
2015.1.30.	이재영	시정권고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추가
2016.9.1.	변재일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 재원 - 방통기금, 국가 지자체 외의 출연금, 기타 등
2016.9.5.	노웅래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위촉/ 재원 다양화
2017.8.4.	송희경	고충처리인 두지 않을 때 3천만원 과태료
2018.8.3.	백혜련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019.8.8.	이상헌	용어변경(속행신청을 - 계속 진행 신청을)
2019.10.18.	한선교	정정·반론보도청구기간, 안날 6개월, 보도일 1년 이내
2019.10.31.	김영주	중재위원 90→120인
2020.6.23.	김영주	중재위원수 90인→120인

2020.7.10.	정청래	중재위원 추천 규정 구체화
2021.2.4.	최강욱	문체부소속 언론위원회 설치 / 중재위원 120명 / 언론위원회 조정신청 신문, 시정명령
2021.6.23.	김용민	언중위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 설치, 운영
2021.8.25.	위원장	중재위원수 확대 (60명-120명)
2024.6.28.	민형배	언중위 조정기일신청 접수일 14일에서 7일로 단축
2024.8.22.	임오경	중재위원 60-120명 확대 / 행정처분, 추후보도청구포함

4. 맺음말

현행 ‘언론중재법’은 반세기 전 ‘언론기본법’에서 채택한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포털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포섭하고 있는 정도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분류법 체계는 인격권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전통적인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언론 피해 구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시민 개인으로서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 또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의 개진과 여론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정체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고, 시사나 정치적 쟁점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언론’으로서 기능한다고 인식하는 시민의 평가, 매체로서의 언론, 언론인에게 적용하는 상당성의 법리 등을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와 인격권 간의 이익 조정에 활용하고 있는 각급 법원의 태도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 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 몇 가지 성격의 유튜브 채널은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 유튜브 채널로 인한 인격권의 피해구제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직선거 시기에 언중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간의 심의 충돌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권형돈(2024)은 유튜브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면서, 디지털 시대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언론 관계법이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층 구분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콘텐츠와 플랫폼 규제를 차별화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계법에서 다양한 미디어 개념을 재정의하고, 수평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만이 아

나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 전반에 걸친 조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모든 유튜브 미디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언중위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인, 주소, 연락처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 사용자에 대한 등록 의무가 부과될 터인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곤란하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그리고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정의하고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권형돈, 2024, 55-56).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할 것인지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김민정(2024)은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된 언론사 운영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하고, ‘인플루언서’가 제작하는 유튜브 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플루언서 제작 유튜브 뉴스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타 개인이 제작하는 유튜브 뉴스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김민정, 2024). 정경석(2024)은 댓글 작성자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보다 해당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정지나 해지가 피해자에게 더욱더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유튜브 운영자인 구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현행 법령상으로도 그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그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과 같은 개별법의 개정보다는 EU처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정경석, 2024). 김주용(2024)은 방송 등의 제호를 내걸고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저널리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생산 주체의 형편을 불문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표할 내용에 대한 선별과 같은 초보적인 편성 행위조차 없었다거나 정기성 또는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김주용, 2024).

김주용은 최근 연구에서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하는 이

전 연구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생산·유통 행위 전체가 저널리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제공 행위가 공연성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중의 지향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간의 사적 공유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매체 개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범주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셋째, 레거시 미디어의 언론으로서 요건 중 형식적 측면의 구비 여부, 이를테면, 정기적 공포 여부나 편집·편성 행위의 존부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중재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이 점이 불명확하다면 콘텐츠 내용 구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 보도문이 언제 업로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유튜브 뉴스 콘텐츠 전반을 원칙적으로 언론, 언론보도의 범주 안으로 포섭하되 채널 구독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 점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시행령을 통해 규율하도록 한다(김주용, 2025, 79-81).

김주용의 제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를테면 17대 국회의 박찬숙 의원안(2006.7.7.), 17대 국회의 최구식 의원안(2006.12.1.발의), 20대 국회의 광상도 의원안(2016.10.28.), 21대 국회의 김승수 의원안(2022.12.27.), 22대 현행 국회의 김승수 의원안(2024.7.17.)의 내용과 유사하고, 학술적인 논증을 통한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본다. 입법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김주용(2025)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몇 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동법 제2조의 ‘언론’에 각 언론의 정의에는 동조 제22호로 신설 제안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만 제22호에서 각 언론으로 포함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당장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법적 위상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함으로써 언론 중재와 실무 간의 괴리, ‘언론중재법’과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 보고자 함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의 댓글에 대한 법적 정비 문제는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관련 관할 기구 간의 토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과 인력 확충,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등 여러 부문의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표 8> 김주용(2025)을 참고한 유튜브 뉴스 채널을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는 방안

현행	현행	개정 제시안	비고
언론중재법 제23조(정의) 제1호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_____말하며 각 제2조제22호의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개정
언론중재법 제23조(정의) 제2호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_____,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언론중재법 제23조(정의) 제22호	-	22.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편성하여 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다만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³⁶⁾	신설/수정
언론중재법 제23조(정의) 제23호	-	23.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사업자 : 제2조제22호의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수정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조의3	-	제1조의3(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22호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간 단위(혹은 월간 단위) 이상으로 새로운 뉴스 동영상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널 구독자의 수가 주간 단위(혹은 월간 단위) 평균 1만 명 미만인 경우 ³⁷⁾	신설/수정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위에서 제시된 시안이 위헌성 심사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교하고 명료하게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언론중재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각 정당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여하는 기구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36) 이 경우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에 위 언론중재법 제2조 제22호에 있는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정의를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김주용, 2025, 82).

37)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채널 구독자 수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김주용(2025, 55, 83) 참조.

■ 참고문헌 ■

- 고시면 (2021).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2021.06.23.)에 대한 야당의 '언론재갈법' 등이라는 시각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62권 10호, 2-24.
- 권형돈 (2024).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7-57.
- 금준경 (2018). 유튜브와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49호, 48-57.
- 김민정 (2024).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9-64.
- 김선호·김위근 (2019). 유튜브의 대약진: <Digital News Report 2019> 한국 관련 주요 결과. <미디어 이슈>, 제5권 3호, 1-12.
- 김영빈·한혜경 (2023). 저널리즘을 성찰하는 공론장의 생성 조건: 저널리즘을 관찰하는 수용자, 투명성을 실천하는 저널리스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31권 4호, 318-392.
- 김영주 (2009). '언론' 유사 개념으로서의 '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5권 1호, 51-85.
- 김영희·윤상길·최운호 (2011). 대한매일신보 국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대한매일신보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55권 2호, 77-102.
- 김익현 (2012). 시민 저널리즘의 본거지 유튜브 환호와 우려의 사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6-9.
- 김주용 (2024).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특성과 언론중재법상 언론 혹은 언론보도 개념의 재구성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7-88.
- 김주용 (2025).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연구: 적용의 저널리즘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4권 1호, 43-93.
- 김영욱 (2025). 주목 권력으로서 언론의 성격 변화와 문제 해결 방안. 한국언론학

- 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1권 1호, 106-155.
- 노기호·강승식 (2004). 미국헌법상 상업적 언론의 개념과 헌법적 보호.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5권 2호, 275-325.
- 마정미 (2019). 유튜브 저널리즘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제19권 1호, 217-246.
- 박아란 (2025). 언론자유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법원 판결과 유럽연합 미디어자유법(EMFA)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1권 1호, 5-43.
- 박아란 (2015).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4권 3호, 49-79.
- 박용상 (2002).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권 1호, 5-31.
- 박용상 (2025a). <신명예훼손법>, 박영사.
- 박용상 (2025b). 언론중재법 개정 제안: 2015-2016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해설(비발표 원고).
-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4호, 179-210.
- 신평 (2021). 진보법학자 신평 교수의 일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희대의 악법'. 고시계사 <고시계>, 제66권 9호, 171-178.
- 양선희 (2020).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1호, 245-262.
- 양재규 (2022). 유튜브는 언론매체가 아니다?. 반론보도닷컴 칼럼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8>, 검색일 2025.6.3.)
- 양재규 (2025).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4권 1호, 137-184.
- 양재규·김창숙 (2011). 언론중재법 상 '언론'개념의 새로운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통권 120호, 59-75.
- 양정애 (2021).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제7권 1호, 1-16.
- 양정애·오세욱 (2018).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미디어 이슈>, 제4권 8호, 1-17.
- 양형모·박주연 (2020). 신문기자의 유튜브 1인 방송 콘텐츠 생산의 특징과 저널리

- 즘 역할 인식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8권 1호, 33-59.
- 언론중재위원회 (2025a). 보도자료: 지난해 언론조정사건 3,937건, 피해구제율 72.5%.
- 언론중재위원회 (2025b). <2024 언론중재위원회 연간 보고서>.
- 오세욱·박아란·최진호 (2021). 한국, 뉴스 전반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중 공동 38위<Digital News Report 2021>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 이슈>, 제7권 4호, 1-17.
- 오해정·최지향 (2022). 유튜브 뉴스채널의 신뢰도 형성 메커니즘 분석: 뉴스품질 인식과 정파성기대부합 인식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제59권 1호, 50-91.
- 유승현·정영주 (2020). 뉴스 유통의 변동과 지상파 뉴스 콘텐츠의 대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상파방송 유튜브 뉴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통권 111호, 68-109.
- 유용민 (2021).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의 뉴스 관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4호, 628-644.
- 유용민 (2019).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논쟁하기: 행동주의의 부상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탈경계화. <한국방송학보>, 제33권 6호, 5-38.
- 유현재 (2025). 한국 정치, 유튜브 때문에 망하는 이유. <관훈저널>, 통권 174호, 49-60.
- 유현재 (2024).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 방안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35.
- 이도연·김동윤·김현 (2022). 이용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인식하는가?: 가짜뉴스 확산 경로 인식,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 행태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53권 1호, 269-288.
- 이성엽 (2025). 유튜브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관훈저널>, 174호, 61-67.
- 이소은·박아란 (2020). 편향적 뉴스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 <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미디어 이슈>, 제6권 3호, 1-14.
- 이승선 (2011).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18호, 7-19.
-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1호, 1-22.
- 이승선 (2023). 1인 미디어 범람 속 레거시 미디어의 책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발표자료집.
- 이승선 (2024). 디지털 시대 선거 보도 규제 법제의 쟁점과 진단: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의 취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70호, 4-17.
- 이용성 (2021). 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위한 언론중재법 입법방향 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5호, 541-557.
- 이재원·양정은 (2021). 연예 뉴스 생산자의 유튜브 저널리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연예 매체 채널의 콘텐츠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2권 3호, 29-54.
- 이종명 (2024). '영리(營利)'한 '항변(Advocacy)'의 시대: '취재'와 '보도'의 맥락에서 살펴본 비영리 언론의 '진지한 저널리즘' 실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0권 4호, 160-200.
- 이종명 (2022a).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 집단의 인식 연구: 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30권 1호, 51-98.
- 이종명 (2022b). 유튜브의 '저널리즘적 실천'에 대한 갑론을박 : 학계, 업계, 수용자, 그리고 유튜버의 상이한 역할 인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장철준 (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단국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7권 4호, 1-40.
- 정경석 (2024).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소고.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5-69.
- 정주연·이재진 (2020). '언론자유 확장'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제31권 2호, 107-130.
- 정철운 (2018). 가짜뉴스·유튜브·극우보수와 저널리즘. 인물과 사상사 <인물과 사상>, 247호, 168-183.
- 조소영 (202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3호, 157-188.
- 조한나·이재진 (2023).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알권

- 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3호, 89-136.
- 최민재·김경환 (2021). 유튜브 저널리즘 콘텐츠 이용과 특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최정호 (1998.12.18). 言論과 正名-바른 말과 바른 이름. 최정호 교수 정년퇴임 기념 강연 원고.
- 최지향 (2024).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누구인가? : 비이용, 간헐적 이용, 정기적 이용, 과이용층의 기성 언론 이용, 정치적 태도 및 시민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128호, 169-197.
- 최진순 (2012). 언론사와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참여와 공유의 플랫폼: '유튜브와 뉴스' 보고서로 본 저널리즘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501호, 84-87.
- 최진호·이현우 (2023).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 <Digital News Report 2023>으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 이슈>, 제9권 4호, 1-24.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a).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b).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a).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b). <2024 언론수용자 조사>.
- 함민정·이상우 (2020).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2호, 36-50.
- 허란 (2024). 저널리즘 원칙은 안중에도 없는 유튜버들 언론 역할 확대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1-75.
- 황용석 (2014). 디지털시대, 신생뉴스서비스의 등장과 법적 '언론성' 개념의 공백.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33호, 30-29.
-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24). *Digital News Report 2024*.

제1주제 토론문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토론문

한 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중재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성과와 개선과제’ 토론문

한 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언론중재법 제정과 주요 경과

- 언론중재법은 2005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2005년 1월 제정된 뒤 7월 시행. 이 법은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등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분산되어있던 법들을 포괄하여 단일화한 법으로,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 포함됨. 그러나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적절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후 5번 개정되었지만 4번은 타 법률의 개정내용이 반영된 것이며, 부분적이거나 실제 언론중재법 개정은 2009년 한 차례. 2009년 개정내용은 인터넷, 포털 등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미디어환경 변화에서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20대 국회까지 개정을 위해 법이 발의된 것은 총 21회로, 주요 내용은 기사삭제권, 열람차단권, 허위보도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제, 가짜뉴스 등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조소영, 2021). 1980년대부터 언론사의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됨.
- 21대 국회에서도 모두 1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를 통합한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정치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한 갈등만 전개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됨.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으나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보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됨. 갈등은 보수/진보 언론 구분없이 언론재갈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되는 경향 보임(조한나·이재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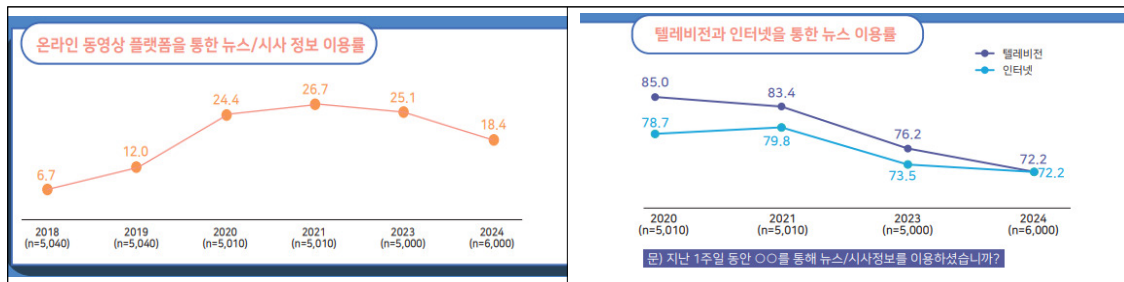
2. 언론(보도)의 자유와 권리의 양면성

-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입법 취지로, 언론사에 대한 규제적 입법이란 점에서 위헌성의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 즉, 언론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는 그 자유자체가 보장점의 시작이었다기보다는 다른 자유권(이를테면 알권리)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보완적 기본권으로 보기에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을 위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이 허용됨.

-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부여된 자유이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 또 타인의 기본권과 깊은 관계를 갖는 권한이므로 그에 따른 헌법상의 책임과 제한의무가 수반됨.
- 따라서 언론은 알권리의 주체인 국민이 정말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재진, 2004)
-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국민에게 충분히 균형감각 있는 보도를 통해 제대로 된 판단을 이끌어내기보다 많은 경우 갈등을 중심으로 한 자극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자사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음.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면적,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제공하기보다 특정 논란에 대해 이념적 시류에 편승하여 제대로 사안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함(이봉현, 2020).

3. 새로운 유형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가능성

- 뉴스 생태계의 변화: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유튜브)에서 뉴스를 이용한다는 수용자가 전년대비 줄어들었지만, 18.4%가 이들 플랫폼에서 뉴스 이용(최근 두드러지는 뉴스회피현상이 요인).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뉴스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2024 언론인수용자조사).



- 조사대상 응답자의 29%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응답. 특히 연령별로 20대에서는 40.5%가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응답.
- 이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뉴스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뉴스의 형식과 내용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뉴스와 일반 정보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음. 물론 뉴스와 시사정보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되기도 함-일반적으로 뉴스는 정해진 형식의 보도프로그램이나 기사가 취재한 사실에 기초한 기사콘텐츠를 지칭하는 반면, 시사정보는 사실과 논평, 외부기고, 다큐멘터리 등 시사성을 가진 정보 전반을 지칭하고 있음(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 발표문의 표 1에서 확인한 것처럼 2005년 이후 조정신청현황 통계 중 인터넷신

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합한 비중이 가장 높고 2010년 이미 전체 신청 건수의 64%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미디어환경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2009년 법 개정 이후 관련 매체에 대한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2009년 법 개정 이후 포함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최근의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 언론중재법 상 언론을 신문, 방송, 잡지, 통신과 같은 매체를 중심으로 규정한 것은 이들 매체가 당대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보기 때문. 따라서 온라인 공간으로 저널리즘 영역이 확대된 지금의 미디어환경에서 동영상 플랫폼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전통 언론이 담당했던 의제설정기능과 공론장 기능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기성 언론에 실망한 시민들이 인터넷과 이들 채널로 몰린 것에 힘입은 바 큼(이준웅, 2019). 그러나 유튜브는 허위조작정보의 진원지이자 확산 경로로 지적받으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을 훼손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됨(양선희, 2020). 나아가 사이버레커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문제도 보임.
- 이러한 피해를 언론조정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콘텐츠삭제와 같은 명령을 통해 처분(행정명령)하거나 플랫폼에 의한 자율규제의 한계(사적검열, 실효성)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김주용, 2025).
- 요약하자면, 언론사가 운영하는 버티컬미디어로서 유튜브 채널은 물론, 언론중재법에서 정의한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뉴스 생산을 표방한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알권리보장)를 보장하되, 그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Accountability)을 요구해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 열람차단, 기사삭제청구, 댓글/댓글 삭제 등에 대하여 발표자의 제안에 동의함.
- 다만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논의되었을 때 나타났던 정치세력 간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봄.
- 실무적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청구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에 동의하고,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증가 필요성에 동의함. 중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처리사건 증가로 처리일수 법정 시한을 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기자협회보, 2024.3.26.) 또한 중재위원 구성 시 법률가, 전문가,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구성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가 균형감 있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문헌

- 김주용 (2025).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방안 연구: 적용의 저널리즘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제24권, 제1호, 43-93.
- 양선희 (2020).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245-262.
- 이봉현 (2020). 신뢰회복의 첫 걸음, 저널리즘 규범 확립과 실천. 윤수진·정예은 (편), <저널리즘 모포시스> (160-186쪽). 팬덤북스.
- 이재진 (2004).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언론과법>, 제3권 제1호, 225-255.
- 이준웅 (2019). 정치의 장된 유튜브 편협하고 알팍한 언론에 실망한 시민들의 탈출구. <신문과 방송>, 8월호, 48-51.
- 조소영 (202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언론과법>, 제20권 제3호, 157-188.
- 조한나·이재진 (2023).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미디어와인격권>, 제9권 제3호, 89-136.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뉴스 이용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언론수용자 FGI를 통해 본 뉴스와 시사정보 개념의 변화.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2024 언론수용자 조사.

제1주제 토론문

언론중재: 무엇을 중재할 것인가?

장 철 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언론중재: 무엇을 중재할 것인가?

장 철 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언론 환경과 인식, 그 수용의 형태까지 모두 바뀌고 있다. 변화의 시기, 발제자에게서 분석·제안한 성과와 개선 과제는 언론중재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공은 좋은 설계뿐 아니라 사용 주체의 정비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느냐에도 크게 의존하게 때문이다. 다만 변화를 위한 진단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도 현장의 권위가 현장 밖의 지적에 귀 기울일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헌법 연구자의 시각에서 언론중재를 바라보는 하나의 목소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발제문에 잘 설명된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피해구제율의 꾸준한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피해구제의 한계”를 이유로 새로운 뉴스콘텐츠를 향하여 위원회의 피해구제 영역을 확장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출발한 언론 환경의 대전환 시기에 거론될 만한 주제임은 분명하다. 언론 자체의 의미가 재정의될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당연한 제도적 유연성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절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결국 “유튜브 저널리즘” 피해에 대한 조정·중재 가능성으로 환원된다. 이 토론의 지평 또한 논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네 가지 분류 중 “③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해당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에 집약한다. 현상적 측면에서 이 새로운 모형의 유튜브 방송은 학술적 정의 시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접속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공적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애써 저널리즘 영역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구독자의 후원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택한 이상, 저널리즘 윤리를 기반으로 한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당한 규제가 될 자격을 필요성과 가능성에서 찾는다면, 이 주제 역시 필요성 차원의 논의부터 시작한다. 먼저 ①, ② 유형의 유튜브 방송이 분류되었다는 점으로부터 기성 언론 역시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이 언론을 수용하는

방식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으니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와 다른 형태로서 ③과 ④의 결정적 차이는 소비자의 방송에 대한 언론 인식 여부, 즉 수용자의 태도인 듯하다. ③은 ①, ②와 같이 기성 언론에서 보도되는 주제를 다루지만 때로 ④에서 취급되는 형식과 내용을 적극 택하여 수익을 거두기도 한다.

③의 언론으로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 ③이 가짜뉴스의 주된 생산지라는 전제와, 명예 등 인격권 보호를 주된 목표로 삼는 언론중재의 제도적 의미를 고려할 때 ③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론사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누구든 손쉽게 방송에 나설 수 있는 특성상, 언론인으로 훈련받지 못한 이들의 가짜뉴스 생산 가능성이 높다고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순한 추론이다. 가짜뉴스는 저널리즘 형태에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 유튜브 앱을 누르는 이들이 단순히 일용할 가짜뉴스를 신봉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은 그들이 플랫폼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맹위를 떨치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성 언론에 대한 권위를 거두지 않았다. 유튜브 저널리즘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편향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안에서 공유된 편향 가치는 기성 언론을 거치지 않는 한 커뮤니티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다. 비교적 철저한 알고리즘 하에서 운용되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상 나와 다른 집단으로의 전파는 쉽지 않다.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여전히 기성 언론이 가지고 있다. 즉, 기성 언론이 손대지 않는 이상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생산자와 그 동조자 사이의 집단적 광기에 머무를 뿐이다. 오히려 가짜뉴스가 유통하는 구조는, 작은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그것이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자 하는 정치권의 손아귀에 들어간 후 정치적 수사에 대한 리포트 형태로 기성 언론에 재생되고 이것이 포털에 도배되며 거기에 수많은 인위적 조작 댓글이 달리는 방식이 아닐까? 언론중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피해구제의 대상은 정치적 권위와 기성 언론의 권위를 모두 획득한 가짜뉴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저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되는 것 자체로 인격권의 피해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기성 언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언론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공유되는 정보는 대부분 정치적 주제일 수밖에 없다. 순수한 사인의 프라이버시가

가짜뉴스를 통해 그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일은 연예인 관련 가십 외에는 거의 없다. 여기에도 기성 언론은 반드시 참여하게 마련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찾아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이동한 이들 사이의 공유된 정보를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일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가짜뉴스로 확정되기까지는 검증의 시간과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는 기성 언론이 흡수한 유튜브 방송의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규제의 가능성 논증으로 전환된다.

유튜브 방송에 대한 중재 대상 편입 문제는 큰 틀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준사법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은 사법 판단에 준하지만 동시에 행정행위의 흐릿한 경계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언론 보도와 그에 대한 피해는 순수하게 권리의 일대일 관계에 있지 않다. 언론이란 공중에 향한 것이며 그 수용 주체는 피해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보도를 접한 모든 이들이다.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를 통해 특정인에게 손해배상이 결정되었다면 단순히 그들 간 권리의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보도를 사실로 믿는 이들에게 중재 결과는 진실에 대한 포기를 설득하는 공적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언론 보도는 화자(speaker)-청자(listener)-구경꾼(bystander)의 이익이 점철된 공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권리의무관계의 종료와 진실 확인의 영역은 별개의 공간에 있다. 유튜브 방송 안의 시민들은 후자의 공간적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다. 이들에게 언론중재의 규제를 가한다면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결집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제한한다면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준의 정치적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규제당한 이들은 제3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재결합할 것임은 물론이다. 인터넷 통제는 가능하지 않다.

③의 영향력이 향상되어 규제를 고민하게 된 상황은 물론 기성 언론에게 위기로 다가오겠지만, 한편으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유튜브 방송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면 기성언론은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공론의 경계에 넘어오지 못하게 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불행히도 몇몇 정치 셀리브레티의 소셜미디어 언급은 그 어떤 논평이나 검증 없이 언론사 보도의 형태로 포털에 자주 등장한다. 선거 직전 등 아주 급한 경우에는 특정 주제의 기사가 수많은 언론사를 출처로 하여 포털에 도배되곤 한다. 포털은 여전히 헤드라인부터 바닥 기사까지 편집자 미상의 편집·편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검증은 언론사 자체의 몫이다. 언론 수용자는 여전히 기성 언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 권위가 잘못 행사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을 수술하기보다 가짜뉴스가 더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교정하는 기성언

론에 더욱 관심을 쏟는 것이 언론중재의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한다.

제2주제 토론문

편리한 해법과 복잡한 정책조정

심 영 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편리한 해법과 복잡한 정책조정

심 영 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1. 현상형태

11. 언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분쟁조정과 중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언론에 대한 정의는 1980년 언론기본법과 2008년 개정된 미디어법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발제자도 언급했듯, 현재 언론에 대한 정의는 저널리즘적 원칙에 따라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화한 뒤, 이를 편집하거나 편성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처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저널리즘 원칙의 부분 혹은 전부를 실천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널리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언론사업자처럼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언론 보도나 이와 유사한 형태와 방법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허위정보 혹은 악의적 정보, 비방과 공격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규제행위를 보편적 원칙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방식을 일상적인 분쟁조정이나 중재에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중개자, 인터넷뉴스콘텐츠생산자를 사회적 제도로써 언론에 대한 정의에 포섭시키는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층위의 사업자에게 부과할 사회적 책무와 내용규제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현행 법률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적관계망(SNS)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법적 정의가 있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정의가 미흡하다. 특히 저널리즘 행위를 하는 언론에 대한 분쟁조정은 해당 사업자가 사회적 제도로써 언론 행위를 할 경우로만 한정한다. 만일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는데, 일회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틱톡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접속자가 폭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중재 대상에 포섭할 수는 없다.

12.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은 사인(언론사가 운영하거나 언론인 출신

이 스스로 ‘방송’이라고 명명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자)과 사인(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같은 사적 분쟁이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사인 간 분쟁은 사적으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당수 인플루언서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저널리스트의 영향력이 일반적인 사인의 수준을 넘어, 공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를 비롯한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인플루언서나 온라인 공간에 있는 저널리스트와 정보획득에서 불균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분명한데, 이를 해소할 해법이 헌법과 법·제도의 틀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13.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 문제가 이미 수십 년째 무규제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증가함에도 정책 관할권을 두고 행정부 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방심위가 국회 과방위와 정보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행정부 내 문화부와 언중위가 국회 문체위와 언론중재법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한경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쟁은 부처 간 협력조정을 통해 통합법률로 심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대측에 대한 입법저지로 관철되는 상황이 잦다. 여기에 여·야간 입법경쟁과 입법갈등까지 더해지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상관없이 정쟁으로 확산하는 문제가 있다.

14. 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그동안 행정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규제를 실천하면서 통합자율규제기구 논의까지 진척을 시켜왔다면,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사에서 자율규제는 사실상 모두 실패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신문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체계는 어느 정도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자율규제기구 사이에 느슨하지만, 협력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방송영역에서는 자율규제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심의와 종결 권한이 방심위와 방통위에 부여된(독점된) 상황이라,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인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15. 반대로 정보통신방법 제44조10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방심위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사실상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다수 갈등 사안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연결된다. 특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은 사실상 방심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2. 개선을 위한 방향

21.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간편한 해법과 복잡한 정책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우려되어온 디지털 플랫폼에서 권리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및 중재를 위한 권한을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는, 신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부여할 사회적 책무(객관적인 알고리즘 검증과 투명성 실천, 불법정보와 권리침해에 대한 자율규제 실천, 광고수익과 슈퍼챗을 비롯한 기부수익에 대한 배분 원칙공개와 수익자의 세무신고 등) 부여 등을 규율함으로써, 그동안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정합 상태였던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무 실천의무 부과와 별도로 저널리즘적 행위를 하는 온라인뉴스콘텐츠제작자/제공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조정 및 중재 대상 지정과 불법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상지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은 통신심의에서 문제 된 정보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접속차단 명령을 내릴 뿐, 사업자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만일 유튜브나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저널리즘적 행위를 하는 인플루언서를 별도의 사업자로 지정한다면, 이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전통적 의미의 언론 혹은 저널리스트와 같은 법적 지위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 형성 과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책무는 부과되어야 한다. 이때, 상당성과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실 각론에 들어가면, 지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언론 중재 및 조정대상 사업자, 통신심의에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모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인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영역과 실질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를 구분하는 기준(예컨대 조회 수, 접속자 수, 상업적 수익창출 등등)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법률적 조어를 통해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23. 유사언론은 존재하는가? 유사언론(pseudo press)은 언론의 형태나 외양을 띠지만 언론으로서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등이 부족하거나,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유사언론은 법률적 용어로 정의할 수 없다. 언론과 유사언론의 행태와 외양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자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널

리즘 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윤리적이어야만 언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언론이라 정의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흔히 신문 칼럼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러한 행위가 유사언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유사언론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 통상 유사언론은 사이비언론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발제문에서처럼 현재로서는 주류언론이 아닌 나머지, 특히 새로운 디지털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저널리스트를 유사언론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틈새가 크다. 오히려 저널리즘 원칙을 실천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는 플랫폼별 책무실천과 혜택,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3. 해법을 위한 고민

31. 우선으로 필요한 사안은 명확하다.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책무 부여, 벌칙에 관한 규정 마련이다. 이러한 법률은 역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중재 영역 포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2. 분쟁조정기구의 통합과 역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분쟁조정과 중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체계를 정리하는 게 제도의 정합성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한 불법정보와 권리침해정보의 신속한 심의는 통신심의기구가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 통합과 역무 조정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3. 그렇다 하더라도, 인증위가 늘어난 디지털 플랫폼 영역의 인플루언서와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을 감당할 조직의 인적, 재정적, 제도적 역량이 충분한가는 고민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정의(혹은 법률적 조어를 통한 정의)를 통해 사실상 사인 간 갈등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사실상 인증위가 미디어 영역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준법원 규모로 조직을 무제한 확대할 수도 없다.

34.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 사인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종의 ‘디스커버리 제도’로 확장된다면, 현재의 인증위 조정중재부 구성에서 피해자의 견해를 들어줄 수 있는 인적구성 필요하다. 정보격차가 있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원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국선(공익)변호인’에 해당하는 지원관이 필요할 수 있다.

35. 자율규제와 행정규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합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조정 및 중재 대상이 증가하는 만큼, 자율규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위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인정하고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제2주제 토론문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 토론문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토론행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하는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경성대학교 손형섭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으로서 여러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언론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은 지난 20년간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의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승선 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I. 언론의 개념과 언론법 대상의 확대논의

1. 언론의 개념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각기 구두에 의한 표현과 문자 등에 의한 표현을 보장하며¹⁾ 이 자유는 미디어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다양한 표현이 그 자유의 대상이 됩니다.²⁾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기관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 사회의 다원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자를 존중하는 의무를 부가하기도 합니다. ³⁾⁴⁾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진실

1) 성낙인, 『헌법학』, 2020, 1257쪽.

2) 손형섭, “디지털 전환에 의한 미디어 변화와 언론관계법 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2021. 9., 137쪽.

3)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21, 478쪽.

4) 손형섭,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2021, 180쪽.

한 사실은 건전한 토론과 논의의 토대가 되므로 사회구성원 상호 간에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⁵⁾ 이를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된 점이 특징입니다(동법 제2조 1호). 이 언론중재제도가 없는 일본과 같은 국가는 언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승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은 헌법상 ‘언론’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론중재법이 모든 표현행위가 아닌, 방송과 신문 등 전통적 언론매체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상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전통적 매체에 한정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의 언론 개념과 언론중재법의 언론매체 사이의 간극은, SNS와 유튜브로 표현하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민들로 인하여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언론의 개념과 언중법의 적용 대상: 유튜브의 언론중재법 대상성

발제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발제문에 인용된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73.8%가 그 필요성에 동의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미 피해구제 결정이 내려진 언론보도가 무분별하게 복제·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 삭제 및 열람차단 청구권, 검색 배제 청구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개정 방향성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유튜브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동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까지 인터넷언론사의 범주

5) 손형섭, 위의 논문, 181쪽.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미디어를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은 중요한 선례입니다. 발제문에서 제기된 여러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언론중재법의 규제 절차 안으로 포섭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지, 만약 찬성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편, 윤재남 부장판사님의 발제문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실제 접수된 유튜브 방송에 대한 조정 사례 4가지 유형은, ①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자가 본 매체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동일하게 게시한 경우, ② 위와 같은 자가 본 매체에 게재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③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해당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④ 위와 같은 자가 다양한 정보를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로 들며 이를 확대해야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므로 모든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에 포함한다거나,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 입장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3. 고의 중과실에 대한 3배 배상

피해자에게 가장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보다 해당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일 수 있다는 발제문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전 언론중재법의 개정 논의에서 논의되었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언론 피해에 대한 배액 배상이 논의되었던바,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지 이승선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Ⅲ. 맺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저는 최근 영국의 로저 브라운소드(Roger Brownsword) 교수가 제시한 ‘법

3.0(Law 3.0)’ 개념을 원용하여 ‘입법 3.0’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사후적인 처벌과 배상(법 1.0)이나 합리적 규제(법 2.0)를 넘어, 기술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적 규제(Code as Law)’를 언론중재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적 채널을 의무화하거나, ‘신고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는 전통적 언론기관보다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이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보 습득 방식이 합리적 공론장 형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사실 확인(Fact-checking)이 결여된 정보나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그리고 공론의 장에 부적합한 편향된 주장이 여과 없이 유포되는 사례를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바로 토론문을 작성, 마감하는 오늘(2025. 6. 9.) 유튜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사실이 거짓이라는 소모적인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며칠이면 명확해질 사실조차 이처럼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현재 뉴미디어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식견을 갖추려는 시민적 노력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헌법 제21조의 언론과의 범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SNS와 유튜브의 언론 표현도 자유의 대상이자 그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언론은 오보에 대한 큰 책임을 지지만 일반 국민은 어떠한 표현을 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개인의 언론 표현의 영향력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이전 방송과 같이 커졌고, 따라서, 표현하는 개인도 그만큼 책임감과 주인의식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식견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오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발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제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 이재진(사회자)

지정토론에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주제에 대해 지정 토론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2주제 발제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이승선(제2주제 발제자)

먼저 모든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사·보도·뉴스 채널 위주로 범위를 좁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 전체 사건 중 약 25% 정도가 삭제 또는 검색 차단 협상 또는 조정이 이뤄진 걸로 관련 논문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러한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장 언론중재법에 해당 권리를 규정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피해 구제 범위 확대를 먼저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매체 중심적인 언론 개념과 법 규정들이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시대에는 피해구제 관점에서 언론의 개념을 기능 중심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전반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언론 개념에 대한 정의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안 제출에 대해서는 중재위가 학계와 공조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 및 국회 상대 노력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저는 징벌적이라고 하는 이 징벌의 효과가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 당장 시급한 작업을 먼저 해소하고 난 후에 다음 순위로 고려해야 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음은 1주제 발제자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윤재남(제1주제 발제자)

유튜브 채널의 언론중재 대상 범위와 관련해 특히 시사 보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피해구제를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중재대상이 되는 채널의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면 피해구제 대상이 돼야 할 유튜브 방송이 언론중재법에 적용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기므로 기본적으로는 정의를 하되 조금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사 보도나 뉴스 유튜브 같은 공적인 관심 사항과 유사하지만 정치인, 연예인 관련 유튜브 중에 피해 대상으로 포함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버 대상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보면 하나가 유명한 '탈덕수용소' 사건이라고 아이돌 장원영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공적인 관심사인 뉴스나 시사 보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대상 내용이더라도 일정 범위는 언론중재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제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1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됐고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 유튜브 채널 쪽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겠다고 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건에서 피고 유튜버가 자기 책임을 그냥 인정하고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지급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언론중재 대상으로 들어왔으면 좀 더 빨리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방송이 빨리 삭제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너무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기존 언론 중에 큰 언론도 많지만 작은 언론사들도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 그냥 언론사들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플로어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우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재위는 예전에 보면 사전 전치 제도이기 때문에 중재위 다음에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중재위에서 해결이 안되면 재판에서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재위 대상 언론을 정할 때 모든 법적인 완비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사법기관인 중재위에서 언론사와 피해자들 간 조정이 빨리 이뤄질수록 좋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같이 협력하여 민생 법안 차원에서 국회에 입법 제안서라도 속히 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원우현 고문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협(변호사,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저는 유튜브 콘텐츠 전체의 신뢰도가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높다는 조사 결과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진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콘텐츠를 보고, 그 콘텐츠에 의해서 본인의 주관이나 생각을 더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든 우든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단순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공정성, 중립성, 책임감, 조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점들은 여러 유튜버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김재협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심석태(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장이자 행사 주최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약간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발제와 토론하시는 분들 중 언론 현업에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 아마 생각함직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의 미래를 얘기하는 상황인데, 현재 중재위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매년 3~4천 건의 사건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인정해 줄 것인지를 먼저 논의한 후에 언론조정 중재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매체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재남(제1주제 발제자)

제가 심 회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 구제 범위를 너무 확대한다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보도였음에도 반론보도 등이 나감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도 좀 위축이 되고 반론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론사에서 실제 조정에 잘 응하는 것을 보면 이미 나간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줘도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반론보도는 이게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카톡 공유나 인터넷으로 너무 확산시키는 현실로 인해 언론에서 피해자의 호소에 공감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수종(언론중재위 전문위원)

선생님들의 쟁점별 발표를 들으면서 언론의 개념이 바뀌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제2주제에서 다루는 것이 언론의 문제인지, 미디어의 문제인지 좀 혼란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미디어 융합 현상에 따라 언론법제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 언론의 개념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저널리즘적 편집이라는 언론의 개념은 바뀐 바가 없는데, 미디어 융합 현상에서 발생하는 법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언론의 개념 확장이 아니라 바뀌는 미디어를 포함하는 새로운 미디어 개념 창출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또 다른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권의 헌법적 기본권적 성격과 저널리즘적 편집 구성을 가진 매체의 정기성, 정기적 업데이트 여부에 대한 고려 및 구독자 수 산정을 위한 사회적 또는 언론학적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이수종 전문위원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지정토론자이신 심영섭 교수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 부탁드립니다.

■ 심영섭(제2주제 토론자)

저는 이수종 박사님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언론 일반을 다루는 문제와 상관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유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매체의 정기성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송대근(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유튜버의 대통령실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자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도 보는 것 같

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출입을 허용받은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상대로는 최소한 언론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송대근 중재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선 교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선(제2주제 발제자)

발제자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매우 중요한 면접 2가지를 모두 통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이 법원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였다가 전치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중재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언론중재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인격권의 구제 장치로 시민들의 면접 심사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2006년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정정보도를 가처분 절차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한 부분과 부칙 조항을 통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사례까지 언론중재법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모두 합헌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마음 속과 헌법 심사 모두 면접을 통과한 언론중재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일반이 유튜브 채널을 언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언론중재법 체계로 포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기초연설하신 박용상 전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상(기조연설자)

먼저 사이버스페이스 거버넌스(Cyberspace Governance) 관련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한 불법 정보를 규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공익이나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불법 정보의 경우에는 결국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심위가 불법 여부를 판단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경우 그 기사에 붙은 댓글로 인해서 사인간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언론중재위에 신청할 수가 없죠. 피신청인이 언론이어야 하니까요. 이렇듯 사인 간의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 언론중재위가 아니라 방심위에서 명예훼손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절차가 비능률적이고 명예훼손을 한 게시자의 실명을 밝히는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에서 방송사나 신문사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댓글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사회자)

네, 박용상 전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미디어 세상의 다양성은 늘어났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피해 구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하면 법이 미디어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빨리 필요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5년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공동 학술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